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현대는 정보화와 국제화 그리고 개방화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민간 모두가 청소년들의 변화 욕구를 충족하고 자아실현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서비스는 더욱 질적, 양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와 보존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치열한 국가간 경쟁에 대처하면서 국가발전을 앞당겨 복지사회를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의 육성과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개발에는 전국민이 총력을 다하여야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개발의 대상은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인적자원 개발에는 지성개발을 위한 학교중심의 청소년교육과, 덕성과 심신의 단련을 위하여 생활권수련활동과 자연권수련활동을 중심으로하는 청소년육성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화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지식의 개발을 통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지상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지식위주의 교육인 학교교육에 대해 정부는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예산의 적극적 편성과 더불어 민간출연에 대해서도 참여를 쉽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덕성과 심신개발을 위한 생활권수련과 자연권 수련 중심의 청소년육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근에 들어와서 청소년육성법(1987), 청소년국의 청소년 업무총괄(1988), 청소년헌장의 공포(1990), 청소년기본법 제정(1991) 그리고 청소년보호법(1997) 등의 법과 제도를 마련하였고, 학문적으로도 대학과 대학원에 청소년학과를 신설하고, 한국청소년학회를 결성(1991)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는 많은 부분에 있어 여전히 청소년육성에 대한 중요성만을 규정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타부분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민간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육성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종합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공공의 성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민간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조건 이외의 분야에 대해 직접 및 간접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청소년육성 활동방향은 학문적으로는 기존의 청소년문제와 육성에 대하여 개별학문적 접근을 넘어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실천에 있어서는 산학협동을 통한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본법에서 이미 청소년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에 대하여 국가가 해야 할 것들을 명시함과 동시에, 민간의 참여를 장려토록 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간에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인식부족과 홍보의 미흡으로 정부나 민간 그리고 국민 모

두가 청소년육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는 정부의 부족한 청소년육성 재원을 민간출연의 참여확대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육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찰하고 이를 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전 국민에게 알리고 청소년육성의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그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청소년육성 분야가 학문적 이론과 육성사업의 실천을 통해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하여는 범 국민적으로 국가와 민간이 통합적인 수행을 해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까지의 국가적 지원에 대한 당위성과 더불어 점점 늘어나는 정부의 국가운영의 막대한 경비부담으로 인한 부족한 청소년육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 대한 청소년육성의 참여 의미와 민간기업들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출연의 당위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세부적 목적은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결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민간출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환의 구체적 예로서 청소년육성을 위한 이론과 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청소년육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의 민간출연 확대 개선방향을 현행의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검토하여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민간기업과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기업과 개인 이윤의 사회적 환원에 있어서 보다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의미있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연구·검토가 있으므로 해서 청소년육성을 위한 민간·학계 공동사업의 기초이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먼저 공익활동과 민간출연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 이론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육성과 민간출연의 관계를 청소년육성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분석한다. 또한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한 민간참여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이의 실제적인 수행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있을 수 있나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여 청소년육성을 위한 민간출연 관련 조세감면 법·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설명하고, 이와 함께 외국의 청소년분야 민간출연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법·제도의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 비교 연구함으로써 앞으로 민간출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청소년육성 관련 법·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공익활동에 있어서의 입장과 민간출연 현황 그리고 현행 민간출연의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또한 많은 국내외 통계조사를 이용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민간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II. 공익활동과 민간출연

인류 역사상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공익”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실천적 도덕행위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국조 단군의 건국이념으로서 가장 전통적인 이상적 인간형성의 개념인 “홍익인간”의 개념도 이와 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 와서 도덕성이 상실되어 가고 자본주의의 병폐가 심화되어 개인과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업주의의 팽배속에서 개인이나, 단체, 기업, 국가정부로부터의 공익활동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국가와 사회는 그 규모가 커지고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이제 정부의 기능 및 역할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특히, 모든 국가들이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건설에 있어서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수행하는 많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많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 및 경제가 팽창하는 속도에 따른 변화와 그에 따른 인간들의 욕구변화가 다양해지고 심화되는 자본주의의 과정속에서 필연적으로 양산된 빈부의 차로 인한 사회계급 구조의 형성과 그로 인한 갈등의 문제는 이의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국가의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처방에서 근본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막대한 자원인데 이제 국민의 세금만으로는 이러한 막대한 자원의 충족을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자원만으로는 절대로 사회를 만족시킬 수 없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국가는 정부 이외의 민간분야에서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는 특히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민간분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유인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1. 공익활동을 위한 민간출연의 역사적 배경

가. 서양 공익활동의 역사적 배경

공익활동에 대한 기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속에서 인간이 사회를 구성해 살아온 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공익활동이라는 것은 원래 사회 그 자체를 위한다기 보다는 사회속에 함께 존재하는 인간이 바로 공익활동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인간들 사이에 갈등과 불편함이 없으면 그 사회는 안정되고 평화로울 것이기에 인간을 떠나서 따로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원시공동사회 이래로 자급자족시대와 봉건경제사회를 거쳐 기계를 통해 대량생산을 할 수 있게된 산업사회 이후로도 많이 가진자가 어려운자들을 위해 자기 것을 내어 놓는다는 것은 그 형태와 제도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근본 의미는 결국 같은 것이다.

서양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 및 요즈음 기업들의 사회적 지원에 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적 지원의 대부분은 대체로 법이나 제도에 의해 주어지기 보다는 가족이나 이웃의 상호부조적 구제에 의해 대부분 해결되거나 지배 계급의 자선적 구제로 해결되었다.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봉건적 생산관계가 하나의 제도적 역할을 하였기에 사회사업이 필요하지 않았다. 차차 봉건사회의 붕괴와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면서 전기 자본주의 시대에 따른 중상주의 및 산업자본의 형성에 따른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근거로 대체로 구빈정책에 치우친 공익활동은 사회구속적인 자선·자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공익활동이 현재 의미의 사회사업으로 내용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가 무르익어 독점자본주의로 가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사회개량주의 사상이 대두된 이후의 단계로부터였다. 그후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사회주의체제의 대두속에서 결국 체제를 변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은 삶의 질을 중요시 여기는 이른바 사회복지를 최고의 국가와 사회체제의 이념으로 하는 시대적 요청이 있게 되었다.¹⁾ 이제 동구의 사회체제가 무너지고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선포된 21세기의 문턱에서 사회복지란 모든 국가의 모든 정부·정당이 최고의 정치·경제·사회의 이상적 이념으로 지향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의 이에 대한 역할과 국민들의 기대는 이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정부는 개인과 단체 및 기업들의 민간참여를 통해 정부의 국가운영 재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민간의 출연을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럽은 15세기에 들어와서부터 두차례에 걸친 소위 엔클로저 운동으로 생활수단을 잃은 농민들이 산업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노동력의 최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스스로는 생활의 궁핍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적 무질서와 봉건제도의 붕괴로 인해 부랑자와 빈민층이 증가함에 따라 영국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구빈과 관련된 법령을 정리하여 마침내 1598년 구빈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1601년에 개정된 엘리자베드법에 의해 기초를 확립하였으나 이것은 시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기 보다는 심화되는 빈부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폭동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이러한 드러나지 않은 구빈법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그로 인한 노동자의 이동을 막기위한 법들이 계속되었는데 1662년 좀더 편안한 조건과 좋은 노동구조를 바라고 이곳저곳의 교구를 순회하고 다니는 빈민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정주법(settlement act)에 따라 지역의 법정거주인에 대해서만 시혜토록 하였고, 1697년 특별법은 브리스톨 노역장 설치의 법적근거를 제공한 것인데 빈민은 다소나마 보수를 받는 노동자가 되고 또한 구빈비를 절약하는 목적에서였다. 1722년의 노역장 입소자격 조사법(workhouse test act)을 제정하게 되었고 빈민

1) 孝橋正一/중앙사회복지연구회 譯, 사회사업의 기본문제, 서울:이론과 실천, 1991, pp.203~242

들을 보수받는 노동자로 만들었으나 이 제도는 청부노동제 채용을 인정함으로써 최저조건의 입찰자에게 노동을 임대가능토록 한 악법이었기 때문에 1782년 길버트법(Gilberts act)에서는 빈민의 노동임대를 금지하고, 1792년 스피햄랜드체제(speenhamland system)는 구빈요원이 방문하여 빈민노동자들의 임금을 모아주고 구조기금 보조금을 지출하였다.

1760~1840년의 산업혁명 이후 수공업, 가내공업, 매뉴팩처 및 공장공업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된 산업자본은 중상주의를 거쳐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과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국가제도의 기틀을 산업화, 근대화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농업의 파괴를 대가로 공업에 대한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빈제도에 있어서도 노동이 가능한 아동이나 빈민들은 최저임찰제를 통해 일을 시키는 비참한 지경에 까지 이르렀고 사회의 구제도 단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한정된 구제만을 하였다. 이후 1834년 개정 구빈법에서는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억압하는 한편 자립이 가능한자에게 생활능력을 키워주는 긍정적 목적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빈민과 독립노동자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고, 특히 피구휼적 빈민의 무제한적 증대를 방지하려 했다.

19세기 후반부터 민간참여자들은 빈민을 가치있는 빈민과 가치없는 빈민으로 구별하였고, 이에 따라 구빈대상자들에게 약간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차츰 막대한 초과이익을 올린 기업과 자본가의 사회사업의 대상과 분야는 계속 확장되어 갔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사업활동의 점차 합리화와 조직화가 요구되었다. 그 선구적 노력은 T.Chalmers의 근린활동(Neighbourhood movement)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많은 민간참여단체들이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선조직협회(COS :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를 출현시켰고 이와동시에 젊은 층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어 인보관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운동은 빈곤에 대한 개별적인 요인해결을 위한 접근보다는 지역사회 환경적 결정요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를 중심에 인보관을 세워 학생들과 빈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생활하면서 실천하는 사회개량적 행동주의적 성향을 가졌다. 영국의 최초 인보관인 토인비홀 이후 인보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인보관운동인 근린조합(neighborhood guild)을 Stanton Coit가 처음 설립한 후 400개 이상의 인보관이 설치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국가에서의 공적구조대상의 일반화가 추구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민간의 참여에 있어서도 이들의 참여가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의 성격을 갖고 있음으로써 각종의 제도적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역공동모금제도로써 1895년 United Jewish Appeal이 보스톤에 설립되었다. 이것은 민간지원자들이 자신들의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했고, 또 끊임없는 지원요청으로 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를위해 공동호소제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공동호소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나중에는 자선보증기구를 세워 재조직하고 이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1913년 미국 클리브랜드의 상공회

의소에 의해 자선연합회를 구성하게 되어 지역공동모금제도의 전기를 갖게 되었다.

현대에와서는 민간출연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먼저 사회사업의 전문직화가 꾀해졌으며²⁾ 경제대공황과 2차세계대전의 결과 빈곤이 사회적·정치적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어 존슨 대통령은 ‘빈곤에 대한 전쟁(war on poverty)’을 선언함으로써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이후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참여와 이론들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사업은 개인적, 집단적인 직접적 사회사업 실천을 지지하는 임상사회사업협회 소속 사회복지사들과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지지하는 사회복지사들로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 사회개혁은 사회복지사들의 책임이 아니고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최근의 경향은 과거의 빈곤에 대한 구체적 차원의 사회사업에서 벗어나 모든 사회적·경제적 계층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 예를들면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보건의료, 가족계획상담, 아동학대, 교정분야, 법정서비스, 경찰국, 그리고 가족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해당 문제와 관련기관에서 사회사업활동이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결국 사회사업의 미래는 그 범위가 국가에서 민간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복지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다수의 공동노력의 방향으로 지향될 전망이다.

나. 우리나라 공익활동의 역사적 배경

한국의 전통적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촌락을 단위로하는 공익활동이 있었는데 개인적이고 민속적인 관행과 계, 향약 등과 같은 집단적인 공익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인 공익활동은 전통적인 것으로 “마당술이” “된장서리” 등인데³⁾ 이는 모두 잘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데 형식적으로 마당을 쓸어주는 대가로 식량을 주거나 적당량의 된장을 서리 하도록 방관하는 미풍양속으로 이와 비슷한 종류의 개인적 공익활동은 지방마다 여러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집단적인 공익활동을 살펴보면 옛부터 대부분 농경사회를 이루고 살아왔던 우리민족은 대부분 자치적 공동체 생활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신라 초기의 “두레”라고 할 수 있다. “두레”의 어원은 “울타리”를 뜻하는 “둘레”(周圍)에서 비롯되었고 담장을 뜻하는 “울”에서 “우리”라는 말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통적인 두레는 특히 농번기에 공동작업을 할 때 협동하고 상부상조하는 공익활동 조직으로서 민족 특유의 ‘협동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특한 전통적 협동 자치조직의 한가지로는 “계(契)”를 들 수 있다. 이는 같은 곳에 사는 사람끼리, 또는 서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아래 모여 일정액의 돈이나 곡식같은 것을 추렴하여 그것을 운영하고 불리어 서로 이용·분배하는 조직으로 신라시대의 “가배계(嘉俳契)”에 시작하여 처음에는 두레와 비슷한 일면을 보이다가 고려시대에 와서는 서민들의

2) 김응일, 조홍식, 김연옥 공저, 사회사업실천론, 서울 1995:나남, pp.44~46

3) 정기성, 우리나라 민간공익활동의 역사적 고찰, 강릉:강릉대학교부설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연구」 제2집(1991), p.296, 이규태, “한국사에 있어서의 복지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복지 사회의 이념과 방향」 (1979), p.37에서 재인용

4) 앞의 책, p.298 참고

사교모임으로 정착하였고 조선시대에 와서 마을 단위의 자치규약인 “향약(鄉約)”이 시행되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필요에 따른 재산의 증식만을 위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아직도 현대 우리사회에서 까지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원래는 사교와 공공사업, 상호부조, 산업활동 등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오늘날의 협동조합과 흡사한 공익활동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널리 행하여졌던 “향약(鄉約)”은 성종 25년(1494년)에 시작되어 광무 8년(1904년)에 이르기 까지 약 400년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된 자발적 상조조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익활동 조직이었다. 특히 향약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간자치적인 상부상조의 활동으로서 현대의 지역사회복지의 정신과 민간출연을 통해 相互救護하는 사회공익활동의 정신과도 통할 수 있는 사회철학을 가지고 있었다.⁵⁾ 이중 최초의 대표적인 향약은 中宗11년에 金安國이 향약의 유래인 중국의 藍田呂氏鄉約을 본받아 관내에 시행토록한 諺解呂氏鄉約이었다. 이후 주로 呂氏鄉約과 비슷한 향약들이 충청도, 경상도, 황해도 지방에서 상호구호를 위해 실시되었는데 그의 기본 4대덕목을 보면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으로 특히 患難相恤은 촌락단위의 복지적 성격을 가진 약정으로 국가에서 적극 장려하였다. 이 이외에도 재앙이나 흉년을 대비하여 미리 향민에게 곡식을 징수 또는 기증받아 저장해 두는 촌락단위의 구휼제도인 “사창(社倉)”이 있었고 옛부터 농사일을 비롯한 이웃의 힘든일과 애경사때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가장 이상적 공익활동인 “품앗이”가 있었으며, 중병자나 불구자, 과부 등의 어려운사람의 농사를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어주는 “공꿀”, 이와 비슷하게 북한지방에서 주로 행해졌던 “부근” 그리고 지금은 대사를 치른 집안의 금품공여를 일컬으나 원래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을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는 “부조” 같은 민간의 자치적 공익활동들이 있었다.⁶⁾ 이러한 공익적 전통 미풍양속은 일제시대에 와서는 거의 해체 또는 폐지되었으며 이 시대의 공익활동이란 것은 오직 그들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 시혜 또는 자선의 형태로 우리민족의 충성을 맺가로하는 정치적 의미가 컸었다.

해방후 구미에서 발달한 개별사회사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50년 6.25동란 직후에 많은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들 외원단체는 동란중인 1952년 7개 기관이 모여 외국민간원조한국연합회(KAVA: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를 결성하였는데 1960년대에는 그 회원단체가 무려 130여 개 단체에 이르렀으나 그 후 철수계획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다. KAVA는 각 기관들이 한국인에 대한 기여와 봉사를 증대·강화하기 위하여 회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한 보건, 교육, 사회복지, 구호 및 지역사회개발 등의 분야에서 정부기관과 유대를 갖고 효과적으로 협조·통합된 단체로서의 사회복지활동에대한 교량적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들 외원단체들은 지역사회조직사업 등 전문화된 사회복지사업을 가능한 한 실천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상호 정보교환을 함으로서 원조의 중복을 피하도록 하고 또한 상호간에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5) 최일섭, 지역사회복지론,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1994), p. 83

6) 위의 책, p. 86~87

들은 한때 우리나라의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주축을 이루었으며 우리나라에 사회사업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도입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도입 후 그것을 익힐 수 있도록 모든 지도와 후원을 다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전문화시키는데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⁷⁾ 그 중 몇몇 주요단체를 열거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세계기독교봉사회(Christian World Service)로 이 봉사회는 가정복지부라는 부서를 통해 사회사업의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또 다른 단체는 메노나이트 중앙재단 한국지부(MCC : Mennonite Central Committee, Korea Relief Unit)로 이 단체는 지금은 철수되고 없지만 한국 최초로 1962년에 가정아동복지사업(FCC: Family Child Assisted Program)을 창설하여 전문적 프로그램을 전개하였으며 그 후신은 현재의 대구가정복지회이다.

우리나라 사회사업을 통한 공익활동의 발전역사에서 외국 민간원조단체들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들의 본래 목적은 물론 전문적 사회사업에 있기보다는 종교적인 선교활동에 있었고 따라서 관계인사들도 전문적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많아 프로그램에 사회사업 방법론은 활용되지 못하고 따라서 체계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많은 단체가 점차로 철수하게 되면서 사회사업의 발전을 오히려 퇴보하게 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처지에 맞는 사회사업의 토착화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많은 기관이나 시설은 아직도 수용보호의 전통적 방법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인력의 수요, 공급에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민간의 사회사업을 통한 공익활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전문기관의 미성숙, 즉 사회사업의 발전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특히 상담기관 같은 것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기관도 전문적 사회사업을 실천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민주주의의 결여 즉, 민간의 공익활동의 전제가 되는 민주주의와 개인존중의 사고방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사회사업이 가진 본래의 의미나 원리가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이론적 결핍, 즉 공익활동으로서의 민간의 사회사업이 준거로 하는 기초과학적 연구기반이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변화로 민간의 공익활동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여건이 날로 개선되고 있는 형편이다.⁸⁾ 최근인 1996년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을 중요한 국가의 방향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 많은 민간기업과 개인들도 이러한 복지적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정부행정 기관에서도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으며 대기업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출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의 공익활동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민간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민간출연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많은 법·제도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그 실

7) 위의 책, p. 97~98

8) 김용일, 조흥식, 김연옥 공저, 앞의 책, p. 57

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결국 공익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도 전문적 연구가 뒷받침이 되고 그에 대한 국민 모두가 능동적인 의식과 적극적인 실천적 행위가 있어야 모두 이롭게 한다는 공익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고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공익활동을 위한 민간출연의 이론적 배경

이미 앞에서 공익활동의 역사적 고찰에서 나타나 것과 같이 공익활동의 자연적인 실천의 형태는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이익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자연적인 활동은 원래의 목적인 공익을 달성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의 변동에 따라 공익활동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좀더 과학적인 분석과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천영역의 변화에 따른 이론적 고찰의 요구는 비단 공익사업 분야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이는 오히려 다양하고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관한 분석이론과 이상적 사회를 꿈꾸는 사회실천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맞물려 돌아가는 여러 톱니바퀴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공익활동에 대한 민간출연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이러한 민간을 통한 공익활동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지향할 사회의 기본적 사회생활의 형태이자 나아가서 문화라는 점이다. 즉, 원래의 공익활동이 인간으로 부터 비롯하여 인간 모두를 위한 인간의 이상적인 사회속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면 이는 역시 역사의 흐름과 변화속에서도 최종적인 목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사회정책의 이론에 대한 고찰과 공익사업에 관한 실천적 이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민간, 특히 기업의 공익활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미래 공익의 실천을 위한 원천이 될 것이다.

가. 사회정책이론

사회란 원래 자연적으로 생성된 인간의 집합체로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를 맞아 인간들은 사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기 시작했고 인간 상호간에 이해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적인 형태로 사회의 모습이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후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계문명의 발달로 사회안에서 계급갈등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심각한 제문제에 의한 인간들의 관심은 인본주의 이후의 인간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사회가 인간들의 최고 관심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가운데 인간들의 불만은 사회전체의 문제로 표면화되고 급기야는 사회체제의 존재 위협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자 국가는 적극적으로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입하게 되고 사회 전체에 대한 혁명적이거나 혹은 개량적 차원에서 폭넓은 복지적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학자와 정책자들은 사회에 대한 복지적 차원의 서로 다른 사회정책이론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회정책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론들을 들 수 있다.⁹⁾

9) Graham Room저/인경석 역, 복지사회학, 서울:한국복지사회연구소(1985), pp. 45~79
참고

① 新마르크스주의 이론

신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사회·경제·정치적 비관적 분석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면에서 다소 수정을 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속하는 학자들은 K.Marx(1818-1883)가 주장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대립, 계속되는 자본축적의 문제점, 노동계급의 사회혁명적 역할 등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들은 자본주의 국가가 최고의 사회정책으로 내거는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사회적 서비스에 의하여 분배된 생활기회를 만들어 주었지만 결과에 있어서의 계급차이는 전후 복지국가의 확립에 의하여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요컨대, 대다수 국민의 생활기회에의 접근을 결정짓는 것은 개개인이 그 노동력을 파는 것에 의하므로 사회정책이 발전했다고 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계급 이익을 분석한 것이 타당치 않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의 축적에 있어서도 이들의 견해는 비록 노동력은 Marx의 주장과는 달리 점차 과학과 기술이 최우선의 노동력으로 대신하는 이질성을 보이고 있으나, 가장 특권층에 속하는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계급에는 관료적인 통제가 증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대다수 국민들은 소외되고 상대적인 비참속에 빠지게 되어 점진적인 자본축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회정책이란 것도 본래 계급투쟁의 산물이므로 더 이상의 투쟁이 없다면 우세한 계급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며(I.Gough)¹⁰⁾, 신마르크스주의자는 국가가 어떻게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부터 자본을 선택적으로 보호하고 있는가를 증명하여야 한다고(C.Offe)¹¹⁾ 말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역할에 관하여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는 사회정책을 통하여 자본주의제도에 의하여 초래된 가장 심각한 소외상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진 척 할 수 있고 자본주의의 불합리성과 계급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은폐될 수 있으며 현상에 대한 과격한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사회정책을 계급간의 대립을 승화시키는 새로운 기술의 하나로서 간주하고 있으며 즉, 사회적 서비스는 과격한 혁명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복지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배계급이 부담하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더욱 큰 재분배를 미리 막고도 남는다는 것을(F.Parkin)¹²⁾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ffe는 국가가 사회정책을 통하여 교육, 보건, 복지와 같은 사용가치가 국가에 의한 조치의 최종목표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약속과 현실간의 괴리가 점차 커질수록 국가의 합법성에 관한 인식은 떨어질 것이며 국민의 기대는 점차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신마르크스주의자들

10) I.Gough(1975), 'State Expenditure in Advanced Capitalism' *New Left Review* No.92, p. 67에서 재인용

11) C.Offe(1974), 'Structural Problems of the Capitalist State' in K.Beyme(ed.) *German Political Studies* Vol.1, pp. 35~37에서 재인용

12) F.Parkin(1971), *Class Inequality and Citizenship* London Macmillian, pp. 124~125에서 재인용

의 견해는 계급의식과 투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산업적인 생산환경의 강조 등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관념을 계속적으로 지양함과 동시에 해방운동을 위한 사회적 여건으로서 보건, 교육, 복지, 환경조건 등에 관한 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자유주의 이론

신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대립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 이론에는 학자에 따라 ‘시장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이론과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장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시장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시장사회에 대하여 가졌던 생각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다. 그들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하고 책임있게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과실 즉, 번영을 증진시켜 준다고 믿고 있으며 시장에 의하여 조직된 사유재산제도는 합리적 사회조직의 대표적인 것이며 그 제한없는 활동은 모든 합리적인 국민으로부터 자유롭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자유주의자들도 일반적으로 우리사회가 자본주의 시장조직과 어느 정도 괴리되고 있으며,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이론에서 주장되던 개인의 자유는 심의 도전받고 있음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이러한 괴리 중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의 사회정책 확대를 들고 있다. 예를들면 F.Hayek는 국가의 행동범위의 확대를 ‘노예의 길’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에 입각한 경쟁제도에 의하여만 민주주의는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에 의한 제도들이 시장제도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보다 나은 생활에의 접근을 노동시장을 통한 보상으로 부터 분리시키는 사회정책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부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경향을 지적하는 한편 더욱이, 사회정책은 가장이 그 가족의 복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책임을 감소시키며, 상호 존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독립의 추구 대신에 영구적인 상호의존을 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광범위한 사회정책은 높은 수준의 세금부담을 초래하게 하며, 이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나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장애요인은 국가의 독점적 복지관료주의가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경향 때문에 더욱 악화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적 서비스의 제도는 현금거래 관계와 상치되는 분배적 제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경제적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위한 ‘인간에 대한 투자’의 수단이 되고 시장사회의 사회적 원리와 사회적 통합의 양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시 하면서 현대의 서방국가의 사회정책이 이러한 자유주의 모형과 어긋나는 점은 분파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압력 때문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이건 아니건, 개인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무시하고 더욱 평등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잘못된 시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19세기의 노동계급의 운동은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와 그 당시 사회조직의 유형간의 내재적인 마찰때문임을 인정하면서도, 계급투쟁은 주된 생활양식으로서 산업주의가 농업을 대체하여 가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 부조화, 노동계급의 빈곤, 도시위생의 부적절과 대중의 문맹 등 사회적 문제는 초기 산업화에 의하여 초래된 사회적 혼란상태이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문제를 여러가지 국가의 개입수단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노동계급에 대한 국민적 재통합'은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사회를 개편하여야 한다는 요구와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은 점차 그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분쟁은 계속될 수 있으나 그 분쟁의 해결은 널리 인정된 절차에 의할 것이므로 계급갈등과 착취에 관한 관심은 틀림없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사회분석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가지는 사회정책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사회정책은 모든 사회집단간에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도록 도우며 노동계급이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집합적이고 혁명적인 행동을 하려는 생활계획을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개별화된 개인적인 직업적 지위와 소득의 추구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업적주의에 입각한 기회의 균등은 평등한 시민권이 수반되고 또한 이에 의하여 뒷받침될 때 모든 중요한 사회 집단으로부터 동의를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자들 중 Kerr와 Galbraith와 같은 수렴이론자들은 계층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포함하여 산업사회의 발전은 대체로 기술적 변화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논리는 권력의 집중보다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다원주의'에 입각한 더욱 업적주의적이고 조화로운 사회구조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한편 Parsons와 같은 구조기능주의 학파의 사회학자들은 선진 산업사회의 '기능적 필수조건'을 도식화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에는 어떤 객관적인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가 창조해 낸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요구는 시장에서의 폭력을 무마할 요구,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으로 부터 노동력을 보호해야 하는 요구 그리고 노동계급의 소요를 억제할 요구 등이다. 이러한 사회학자들은 그들의 기능주의 이론에 생물학적인 종의 진화와 유사한 진화론적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의 관념을 접합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회정책은 선진사회의 기능적 필수조건인 기술적으로 능력있는 노동력을 창조하고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정책의 계속적인 확충은 산업주의의 논리에 의하여 가능하리라 믿고 있다.

결국 자유주의자들의 이론을 종합해 보면 시장자유주의자들은 공평한 계약과 이해관계의 자연적인 조화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시장제도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대립되는 이해관계 집단의 다원성에 따른 '정치적 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사회민주주의 이론

자유주의나 신마르크스주의와 다른 사회복지관련 사회정책중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들과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다. 이 이론을 a) 이해관계, 불평등 및 현금거래관계 b) 사회변동의 역동성과 사회정책 발전의 역동성 c) 사회정책의 상호관계와 사회통합의 유형의 세가지 범주에서 살펴보면 먼저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 오늘날의 사회정책과 시장에서의 현금거래관계를 업적주의 질서에 대한 보완적인 것으로 보는데 반하여 사회민주적 접근방식은 사회권을 업적 보다는 요구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학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관념간의 개념적이고 경험적 관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사회정책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사회정책이 생활기회의 분배원리로서 자본주의의 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와 결합되고 있고, 전후 영국에서 보여준 복지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원리나 그 경험적 실체에 있어서나, 신마르크스주의자의 현금거래관계에 관한 정의도, 시장자유주의자의 요구에 대한 관념도, 또한 정치적 자유주의의 업적주의에 의한 분배적 정의도 적절한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의 발전의 범주를 살펴보면 자유주의이론의 경우 시장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시장에서의 가치가 사회조직의 중요한 원리이고,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에게는 Parsons의 ‘진화론적 보편성’과 같은 개념으로 표현되는 한편, 신마르크스주의자의 경우에는 시장가치의 계속적인 강요는 노동계급에 대한 점진적인 평가절차와 비인간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인간화된 다른 사회조직으로 혁명적으로 대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사회정책에 관한 사회민주적 접근방식의 주된 주제는 사회정책의 형성은 진정한 가치 선택의 문제를 포함한다는 것으로서 즉, 장래는 ‘개방된 것이며 오늘날의 정치적 결정은 장래의 서방산업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결국 불가피하게 가치선택일 수 뿐이 없으며 따라서 정치적 결정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조화에 부여된 의미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민주적 저술가들은, 대체로 사회정책 발전의 역동성에 관하여 두가지 주장을 하는데 첫째로, 사회정책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에 대한 반응으로, 또한 이를 얻기 위하여, 채택되고 추진되는 면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둘째로, 이러한 개혁의 실현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 제시되고 정치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권의 실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사회정책의 발전은 정치적 목표의 추구하고 이를 위한 대중적 지지의 유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있어서 사회정책과 사회적 통합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사회민주적 저술가들은 현대국가가 사회정책을 통하여 고전적 자본주의 시장사회하에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그들의 선배들의 주장에 대체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를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조화의 가능성, 이러한 통합에 있어서 사회정책의 역할 그리고 개별적인 행동과 집단형성에 있어서의 사회정책의 의미 등에 관해 고찰해 보면 사회민주적 저술가들은 사회적 통합은 필연적으로 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이란 공익사업과 민간사업이라는 이분법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사회권이 실현되는 도덕적 사회의 경험으로부터 그 이상의 사회적 개혁, 예를 들면 노동의 직업적 분화를 위한 새로운 기대와 대중적 요구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공공의 그리고 민간의 복지관료제도를 포함한 새롭고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의 집중에 의하여, 공동이익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선택의 결과로서 무엇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공공의 토론없이, 사회정책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시장제도에 따른 탐욕적 개인주의와 형식적인 업적주의 교육제도하에서는 사회정책이 도덕적 재건과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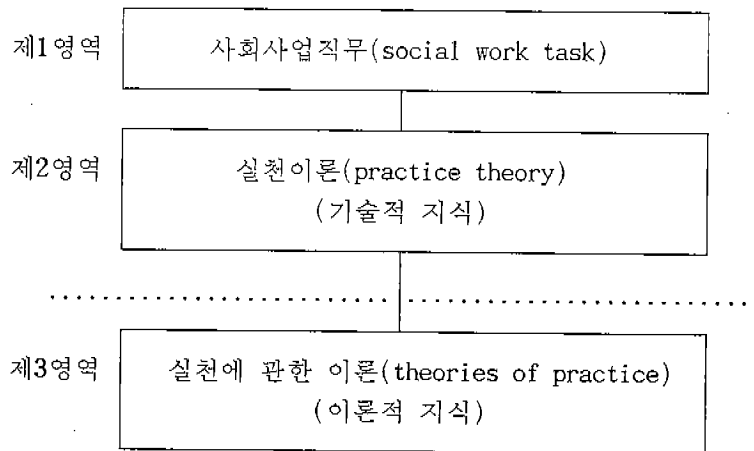
나. 공익사업실천이론

앞에서 다룬 사회정책이론이 공익활동과 민간활동을 관계로 연결하여 다루는 것이 거시적이고 근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공익사업실천이론은 위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본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공익활동이나 공익사업의 개념은 요즈음 기업들의 사회사업활동의 범위가 단지 전통적인 사회사업의 범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화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중요한 사회정책적, 사회복지적 개념으로 일상과 학계의 이론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과거의 공익사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익활동의 대부분은 사회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익활동에서 사회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실천이론에 대한 이론적 발전은 아직 사회사업실천이론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발전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익사업의 대표로서 사회사업실천이론을 예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사업실천이론은 사회복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개입활동을 다루는 이론과 이러한 실천적 이론의 바탕이 되는 인간과 환경에 폭넓은 사실을 설명하는 개념적 틀을 제공해 주는 이론으로서 사회과학의 이론들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¹³⁾

13) 김용일, 조홍식, 김연옥 공저, 앞의 책, pp. 135~156 참고

< 표 II-1 > 사회사업 실천이론의 범주



이 표를 볼 것 같으면 제1영역과 제2영역은 전문실천영역에 해당하고 제3영역은 이러한 전문실천영역에 대한 거시적인 원론적 이론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고 전문실천영역의 제2영역인 실천이론은 직접 사회사업을 직무하는데 필요한 실천적 기술지식을 전달하게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D.Howe의 사회사업이론 분류를 빌리자면 '사회사업을 위한 이론'(theories of social work)과 '사회사업의 이론'(theories of social work)의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바로 위의 제3영역인 실천에 관한 이론을 말하며, 후자는 제2영역인 '실천이론'을 말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사회사업실천이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위의 사회정책이론에서 살펴 보았듯이 어떠한 이론의 뿌리에는 그 이론을 지탱해 주는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이는 인간주체와 객체에 대한 인간이 가지는 일련의 신념이나 관념 또는 태도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서로 상이한 이데올로기는 서로 상이한 가치관에 의해 형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회사업은 처음부터 상황속의 인간에 관심을 두어 개인과 사회간의 상호작용을 이루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사업의 실천이론도 사회정책이론과 마찬가지로 마침내는 인간을 보는 관점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보는 관점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서 사회사업실천이론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① 전통적 사회사업이론

전통적 사회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사회사업실천이론들은 사회사업의 전문화나 과학화에 크게 이바지해 왔고, 오늘날에도 제반 전통적 사회사업실천이론에서 개발한 개념이나 지식 및 방법들이 공익실천사업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 사회사업실천이론이 갖는 기본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전통적 사회사업이론의 대부분은 S.Freud의 정신분석학 이론에 크게 의존하여 인간과 사회의 심층분석을 통

해 사회사업이론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그 이론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개인의 정신 내적 측면에 집중을 한 나머지 문제를 진단할 때, 사회적, 환경적 관련성은 도외시하고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상황 속의 개인이라는 사회사업의 기본개념을 유지하기가 어렵었다는 지적이다. 둘째, 전통적 사회사업 이론은 의료모델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인데 이는 아직까지도 사회사업실천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를 치료받아야 할 결함이나 장애 및 병리를 가진 자로 간주하여 임상적으로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치료방식을 위주로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전통적 사회사업은 또한 행동주의적 이론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이론은 인간의 퍼스널리티는 대부분 환경의 산물이며 그의 행동은 상이한 여러가지 학습과정의 결과로 나타남을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인간행동은 욕구나 내적 상태가 아닌 환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② 실존주의적 사회사업이론

실존주의는 원래 인간행동에 관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자신 및 타인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등을 추구하는 철학사조인데 주로 인간의 실존상황에 있어서의 행위의 선택과 자유 및 책임문제 등을 탐구하고 있다. 실존주의 사상의 본질은 대표적으로 S.Kierkegaard의 '존재'라는 용어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인간은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존주의적 입장은 사회사업 실천에 도입되어 클라이언트를 죽, 인간에 대한 단편적 견해(중세, 행동주의의 견해)를 반대하며 인간을 실존의 생활상황에서 전인적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③ 급진적 사회사업이론

급진적 사회사업이론은 인간의 행동과 의식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의 근원적 모순타과를 위한 사회주의적 입장을 강조한다. 급진적 사회사업은 인간이 스스로 집단적 의식안에서 자유와 인간성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면서 사회사업의 목적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을 구별 할 수 없는 집단적 가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경험과 행동에서 유리된 이론적 공식만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그의 근원은 개인의 행동과 의식의 변화에 있고 이 의식화는(conciousness) 결국 자유화 교육이며, 이것은 전통적 교육과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마르크스주의 사회사업이론

마르크스주의 사회사업이론은 전문적 사회복지사의 직업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치적 개입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치적 개입은 마르크스주의의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서 잠재된 사회갈등을 의식화하여 계급갈등의식을 사회행동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사업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완전히 비관적이다. 왜냐하면 이미 위에서 신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정책이론에서 보았듯이 사회사업은 비생산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자본주의 제도를 영속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의 제도이며, 더우기 국가의 일차적 기능이 통합되지 못한 사회의 제반 요소들을 재합시키려고 할 때 사회사업이 현존구조를 정당화시키는 무가치한 일을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정책에서와 같은 개량주의적 환상에서 깨어나고 올바른 사회주의에 관한 정치적 전망을 가진다면 그들은 혁명적 운동의 생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민간 기업문화이론과 공익사업활동

공익을 위한 민간활동의 환경은 역사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까지 위에서는 주로 사회와 국가전체가 공익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는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현대에 와서 가장 활발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공익사업활동에 관한 제반 이론에 관해 고찰을 함으로서 공익활동과 민간출연의 관계에 대한 핵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공익활동과 민간출연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요즈음 특히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변화가 정부나 출연자나 수혜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는 과거의 사회복지국가의 완성을 꿈꾸는 시혜자의 역할을 점차 기업에게 넘기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현대의 변화된 기업의 역할을 먼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은 산업화 초기에는 소비자와 종업원이 존재할 뿐이었으므로 기업의 주요 환경은 기업의 일상적 경영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한정되었으며 정부는 기업과는 무관한 존재였다. 그후 자본주의가 발전하여 감에 따라 점차 정부와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조직의 조직적인 활동이 전개되어 기업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문제가 점차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내지 사회적 반응이 제기되고 기업과 사회의 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의의를 갖게 된 것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익집단의 조직화된 활동이 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다원사회(pluralistic society)가 성립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자본주의 경제의 전통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던, 기업, 정부, 근로자, 소비자에 대하여 지역사회나 공중이라는 새로운 이익집단이 등장하게 되고, 다원주의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여러 이익집단의 기업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정부가 이러한 제 요구와 기업의 반응을 조정하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하지만 기업의 자본축적이 끊임없이 불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정책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부는 기업에 대하여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는 독재정부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모든 정부에게는 공통된 사실로서 오히려 정당정치로 운영되는 정부에 기업의 영향력은 날로 강화되는 현실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심화속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때에 따라 상호 협력적 관계를 맺어서 기존의 정치·경제사회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사실 사회체제에 있어서 가장 핵

심적인 문제는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의 문제이다. 사회안의 여러 시스템들은 각기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힘과 구조를 효과적인 기능을 통해서 통일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시대에 와서 이러한 효과적인 기능을 위해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위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견 중에는 대표적으로 현대사회는 사회의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elite)들이 사회의 기능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는 엘리트주의의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 다원주의는 현대사회를 여러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는 세분화된 다원사회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판은 특히 기업에의 권력집중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즉 기업은 다른 사회조직과는 달리 자산의 결합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어 다른 사회조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비판에 의하면 다원주의 사회의 이익집단들은 정부의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적 권력의 집중, 즉 기업의 권력집중을 견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비판들도 기업이 기본적으로는 사회의 한 이익집단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주체이므로 아무리 권력이 약화되어도 타집단들에 비해 강력한 권력을 갖게되므로 다원주의사회에서의 기업경영자들은 이러한 기업의 권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권력을 사회복지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자제를, 때로는 적극적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기업의 사회에 대한 기본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어디까지로 규정해야 하는가? 원래 기업의 사회에서의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경제가치의 생산에 있으며, 그밖에는 다른 어떤 사회 참여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 생산우선주의(productivism)와 사회봉사를 기업의 도덕적 의무로 규정하고 사회의 이익증진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봉사주의(philanthropy)가 있다. 그동안 논의의 핵심이 되어왔던 이 두 가지 관점 외에 최근에는 기업이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환경보전, 자원절약 등과 같은 비생산적인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것은 보다 장기적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기업이익(self-interest)의 확대라고 해석하는 진보주의(progressivism)적 관점과 기업의 경제활동도 이윤추구보다는 이타주의에 근거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리적 이상주의(ethical idealism)가 새로 등장하였다. 사실 이윤추구가 기업존립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점을 전제할 때,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하고 있는 생산, 고용 등의 경제행위야말로 기업의 일차적인 사회적 책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환경이 변화하고 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책임의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경제활동 또한 사회변화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근래 많은 기업들이 경영전략 계획을

14) 신유근, 기업과 사회, 서울: 경문사(1992), pp. 100~107 참고

수립할 때 기업경영과 사회문제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이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가동시키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진보주의적 견해가 확산되고 있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기업의 사회참여 활동은 이제 기업경영의 중추적 기능의 하나이며, 기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행투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이제 기업의 사회공익활동은 결코 좁의 의미로 ‘부의 환원’이라는 시혜적 차원의 경영 외적 활동이라고 한정할 수 없고 기업이 사회 변화의 능동적 주체로 자리 매김 되기 시작한 지금, 사회공익활동은 기업경영의 중추적 기능의 하나이며, 기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행투자의 개념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성공적 기업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¹⁵⁾

15) 삼성사회공헌팀, 사랑의 밋 나눔의 별 - 삼성사회공헌활동, 서울(1995), p. 9, 지난 50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18개의 기업을 5년간에 걸쳐 J.C.Clollins와 J.I.Porras이 그들의 글 “*Built to Last: Successful Habits of Visionary companies*”에서 집중 분석한 연구결과 그들의 공통적 특징중 하나는 이들이 이윤만을 추구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업의 이윤이 기업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었지 기업의 절대적 목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 정구현(199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재단의 역할”,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한국기업재단총람, 서울(1995) 중에서 p. 7 참고

III. 청소년육성과 민간출연

소위 '탈(脫)산업사회'라 일컬어지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시대사조안에서 21세기를 맞는 우리사회는 정보화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사회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은 지금까지 서구를 중심으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여 결국 자연환경의 파괴와 더불어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불행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제 그 폐해가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서구의 자연정복의 역사속에서 함께 발달한 고도의 과학기술은 경제력 창출의 새로운 힘과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여 인간의 가치관을 혼란케하는 황금만능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 놓은 물질의 풍요는 상대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결핍을 초래하여서 물질의 경영과 운용이 인간 모두를 위해서 善하게 있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 모두가 경제지상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비이성적으로 행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사회를 점차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도덕부재의 현상으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어린 청소년세대들에게도 점차 널리 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세대가 바로 현재의 청소년들이다. 한 나라의 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상황은 세계 선진 여러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 아픔이다.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자본주의의 메카니즘 속에서 각국의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청소년들을 학교교육을 통해 시대에 뒤지지 않는 지식을 습득케하는 한편 핵가족화 되는 사회속에서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내에서의 도덕적 가치판단의 습득 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자연과 친화할 수 있도록 수련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복지를 위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점차로 비대해져 가는 국가경영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대한 다국적기업 규모의 기업들을 비롯한 민간들에게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 주거나 국가를 도와 보충적 역할을 해주기를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⁶⁾ 이러한 가운데에 국가의 미래가 달린 청소년육성을 위한 민간출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대는 아직까지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폭넓게 인식되어 청소년육성을 위해서는

16)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복지제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알려져 온 스웨덴이 복지제도를 부분적으로 축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높은 복지수준은 높은 조세율을 의미하는데, 세율이 높으면 결국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낮추고 복지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면 엄청난 재정적자를 경험하게 되는데 재정적자가 많으면 그 나라 경제와 통화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서 건전한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져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 - 한국기업재단총람(1995), p. 17~18 참고

부분적으로만 정책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선진국가일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많은 부분을 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청소년육성의 중요성과 청소년육성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민간출연의 의미와 법·제도적인 개선방향 등에 관한 고찰은 우리의 미래사회를 건전하게 건설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1. 청소년육성의 의의와 청소년육성 현황

가. 청소년육성의 의의

오늘날 우리는平生敎育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평생교육은 원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의미로는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의 확산을 의미하고 있다. 삶은 교육의 연장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교육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양적 팽창이 우리에게 교육의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 졌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만족스러운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조기교육이다, 입시교육이다 해서 학교 입학 전부터 즐거움이 있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졸업 후에도 직장에서 끊임없이 진급을 위한 시험과 교육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교육의 확산으로부터 우리는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로 가득찬, 환경으로 부터 강요된 삶 밖에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 심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제 정보화사회를 맞아서 男女老少 누구나가 컴퓨터 교육을 받지 못하면 21세기에는 존재의 위협조차 맞게 될 전망이다. 우리는 이러한 무차별한 교육의 범람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을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건전한 이웃사회와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인의 화합과 지구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국가사회적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을 맞고 있다. 그 중대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틀에 박힌 청소년의 학교교육에 대응하고 개선하려는 청소년육성정책이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청소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가치있게 여기며,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나 하는 것은 바로 장차 올 미래의 그 사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도적인 범주 안에서 우리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항에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者를 말한다”¹⁷⁾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 시기는 아동기와 성년기를 이어주는 인생의 중추적 시기로 우리 모두의 전체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우선 신체의 성숙과정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성(性)과 이성(異性)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고 자율적 사고와 행동이 있게 되는 시기이다. 또한 환경으로부터 습득된 지식들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하며 그를 통해 지적 성장이 활발해 지는 시기이며 동시에, 도

17) 문화체육부, 청소년 기본법령집(1995.4), p. 3

덕적 가치판단이 형성되어서 자신과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의무를 의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이 시기에 익히게 되는 것이다. 즉, 知·德·體가 조화된 인간으로서의 필요한 내용을 이 시기에 배우고 익혀서 성숙한 전인격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에 따라 한 개인이나 국가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 韓民族 청소년은 남한에 1,310만, 북한에 780만, 해외에 160만 등 총 2,25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남한의 청소년 대부분은 잘못된 교육제도에 의해서 위에서 말한 지·덕·체가 조화된 인간으로 바르게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시대 청소년들의 교육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 학교라는 사회화기관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오늘날의 우리의 학교교육은 대학입시를 겨냥해서 지나친 입시경쟁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감수성이 풍부하고 열기가 왕성한 시기의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경쟁위주의 입시제도 아래에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장소가 제공되어 있지 않고, 핵가족화된 직업부모들에게서도 위로와 애정을 받지 못하며, 퇴폐적 상업주의에 물들은 대중매체로 부터 도올바르게 선도되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자극을 받아 그의 귀중한 시기를 충동적, 음성적으로 보내며 방황하게 되는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 이는 바로 우리 교육이 현실의 정보화시대에만 대비하여 과학기술적 지식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人性 교육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의지와 정책으로 현실도 무시하지 않고, 그러나 현실에 집착 또는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비판적인 도덕의식으로 인성을 이상적으로 함양시켜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는 역사의 주체로 개개인을 육성하여야 한다. 즉, 우리 청소년들이 21세기의 정보화사회를 선도하고 자연과 인간과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지식·기술·정보를 활용하는 지적 능력인 ‘지성’을 학교의 수업을 통하여 배우고, 자연과 생활속에서 자연·인간·환경의 귀중한 가치를 내면화하는 도덕적 능력인 ‘덕성’을 함양해 주어야 한다.¹⁸⁾ 우리는 청소년 성장을 돕는 기능을 일반적으로 광의의 교육에 포함하여 이해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위한 행정체계나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에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으로 그 기능이 구분되어 있다. 청소년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이해의 방법으로 학업을 통하여 기능발달과 지성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은 사회와 자연 속에 바련된 다양한 수련터전에서 수련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에 의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감성개발과 덕성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그려보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¹⁹⁾

18) 한국청소년개발원, 1급 청소년 지도사 과정 연수교재 - 「21세기 청소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1996) 중 “한국청소년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p. 3 참고

19) 위의 책, “교육과 육성의 의미와 관계”, p. 52 참고

<표 III-1>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의 비교

구 분	청 소 년 교 육	청 소 년 육 성																														
헌법의 근거	헌법 제 31 조	헌법 제 34 조																														
대 상	학 생 <table><tr><td>국교생</td><td>중학생</td><td>고교생</td></tr><tr><td>4,869</td><td>2,276</td><td>2,284</td></tr><tr><td>대학생</td><td>계</td><td></td></tr><tr><td>1,012</td><td>10,441</td><td></td></tr></table>	국교생	중학생	고교생	4,869	2,276	2,284	대학생	계		1,012	10,441		전체청소년 *()는 %임 <table><tr><td>학 생</td><td>근 로</td><td>복 무</td></tr><tr><td>8,440</td><td>2,380</td><td>2,240</td></tr><tr><td>(62)</td><td>(17)</td><td>(17)</td></tr><tr><td>1,012</td><td>10,441</td><td></td></tr><tr><td>무 직</td><td>계</td><td></td></tr><tr><td>580(4)</td><td>13,640</td><td></td></tr></table> * 학생청소년(9-24세, 국4-대4): 학생중 국1-3년생 200만명제외	학 생	근 로	복 무	8,440	2,380	2,240	(62)	(17)	(17)	1,012	10,441		무 직	계		580(4)	13,640	
	국교생	중학생	고교생																													
	4,869	2,276	2,284																													
	대학생	계																														
	1,012	10,441																														
학 생	근 로	복 무																														
8,440	2,380	2,240																														
(62)	(17)	(17)																														
1,012	10,441																															
무 직	계																															
580(4)	13,640																															
청 소 년 활 동 내 용	학 업 활 동 교과과정에 의해 학문을 수학하는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한 부분적인 특별활동	수 련 활 동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청 소 년 활 동 목 표	학업활동을 통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습득 및 기초적인 덕성·체력함양	수련활동을 통한 충분한 덕성과 체력 함양																														
활 동 수 단	암 기 · 이 해	체 형 · 숙 달																														
활 동 무 대	학 교 중 심	사회와 자연중심																														
참 여 방 법	교과과정에 의해 정해진 학습과목과 시간에 따라 획일적·타율적으로 참여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 시설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수련활동에 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																														
지도자형태	과목별 전문교사 위주	포괄적지도자 및 기능적 지도자 위주(* 상담의 경우)																														

위의 도표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청소년교육은 과목별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를 지도자로 하여 학령과 학력 기준에 따른 동질집단이, 정해진 학제와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데 비해, 청소년육성은 철학적·역사적 지식과 인간적 감화력을 갖추거나 고도로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지도자로 하며, 연령과 생활이 다른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과 흥미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육성은 청소년 생활 전반의 질적 향상과 잠재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교육의 근본바탕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⁰⁾ 이렇게 볼 때에 교육과 육성은 상호 균형과 보

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위의 도표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헌법 제 31조와 교육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 교육은 국가의 학교제도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따른 학습을 통해 기능 발달과 지성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육성은 헌법 제34조와 청소년 기본법 등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생활과 자연속에 준비된 다양한 수련터전에서 수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련활동을 통해 심신을 닦아 감성개발과 덕성함양, 체력단련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교육은 과목별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를 통해 사회화(socialization)를 위한 지식과 규범, 행동양식을 익히게하는 반면에 청소년육성의 지도자들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전인격체의 형성에 관한 철학적·역사적 자각을 지니고 청소년에 대한 애정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수련활동을 통해 덕성을 길러주며 체력을 단련시켜 지성, 감성, 덕성, 체력이 잘 조화된 청소년을 키워 내는 것이다. 청소년육성은 의무적인 교육과 달리 근본적으로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을 그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고 범사회적인 관심으로 민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결국 미래의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하여는 21세기의 정보화사회를 대비하여 학교제도를 통한 지식의 습득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지식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중요성으로 볼 때 청소년육성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나. 청소년육성의 현황

산업혁명 이후의 무한대의 경쟁사회 속에서 새로운 부의 창출도구로 등장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여 왔다. 우리사회도 6.25 전쟁 후 강력한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 주도아래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세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세대간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고 경제성장만을 지향하는 주변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심한 경쟁사회의 상업주의·능력주의·결과주의가 점점 낮은 연령의 청소년세대들에게 강압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우리 청소년들의 현상학과 문제점은 상당히 심각한 형편이고 미래의 전망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먼저 우리 청소년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지·덕·체가 조화된 전인교육보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정신적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관련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방치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결핍으로 말할 수 있는데 청소년육성의 복지증진에 있어서 문화시설 기자재 부족, 문화수련프로그램 부족, 문화를 지도하는 지도자양성의 미흡, 문화활동 편의와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카드제도의 부재, 청소년 정보문화의 낙후 등 문화적 활동을 통한 청소년복지를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인 대학입시와 외국에 비해 짧은 여름방학으로 인해서 문화복지의 실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이를 누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청소년인구 13,121천명에 청소년 수련시설은 현재 421여개에 불과하며 민간 수련시설은 설비와 인력부족, 프로그램의 미흡 등으로 활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청소년시설의 참여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요즘은 교육개혁 차원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제고와 봉사정신의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 또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많은 수요에 비해 시설과 프로그램이 절대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정보화시대인 21세기를 준비하고 청소년 정보마인드 함양과 모든 청소년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정보센터 또는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카드”제 도입과 같은 시범 사업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데 정부의 이에 대한 노력은 매우 미진한 편이다. 이와함께 청소년의 바른 육성을 위한 현장 지도자로서의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인식과 보수 및 배려, 일선교사의 지도자 자격획득후의 부족한 혜택 등으로 연수기피 현상이 있으며 이수과정의 세분, 등록요건의 엄격, 검정기준의 미비 등 바른 지도자 양성제도의 불합리적 요인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의 우리 모두에게 심각할 정도의 사회문제로 까지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범죄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범죄의 질과 도가 점점 흉악화·연소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청소년의 비행과 폭력의 예방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도 이에 대한 국가·가정·사회의 관심이 부족하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청소년상담 등의 사후관리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환경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주 미흡한 형편이다. 이러한 일반 청소년들에 대한 부족한 상황 뿐만 아니라 무직·미진학 청소년(13만 8천명), 근로청소년(251만명), 영농후계 청소년(7만 8천명), 보호시설 수용청소년(17,904명), 소년소녀가장(14,372명), 생활보호대상 청소년(19만명) 등에 대한 복지차원의 특별배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가치관 혼란으로 부모의 잘못된 자녀교육관 만연과 급속히 늘어나는 이혼율에 따른 문제청소년의 증가에 대처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고 한편, 지역주의로 분열된 민족의식과 국가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들의 지역간 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미흡한 해외교포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세계화정책에 발 맞추어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편중되어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많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문화적 복지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들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많은 관심과 참여는 청소년육성을 실행하는 실재에 있어서 교육에 비해 매우 취약한 재정부분에 더욱 요청이 된다. 청소년육성재원과 교육재원을 비교해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다. 청소년육성 재원의 실태

교육에 비해 매우 취약한 청소년육성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재원의 현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으로서는 청소년육성 기반시설 및

여건조성을 위한 국고예산, 시·군·구 및 읍·면·동의 청소년시설 건립 등을 위한 지방양여금, 국고예산 지원에 따른 지방부담비, 청소년프로그램사업 지원 등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²¹⁾

① 국가예산

1996년도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고예산은 총 408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7억 9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청소년육성 국고예산 97억원, 농어촌 출신학생 기숙사건립지원비 10억원 등이다. 그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는데 11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전체 국고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개발원 출연금과 청소년 대화의 광장 운영 등의 예산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농어촌 출신학생 기술사 건립지원비에 3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표Ⅲ-2> 청소년육성 국고예산

(단위:백만원)

사 업 명	'95 예산(A)	'96 예산(B)	증감(B-A)
계	30,098	40,895	10,797
<일반회계>	18,098	27,895	8,797
○ 청소년정책	15,912	25,512	9,600
○ 한국청소년개발원 출연	2,186	2,383	197
<특별회계>	12,000	13,000	1,000
○ 청소년육성기금출연(재·특)	10,000	10,000	0
○ 농어촌출신 학생기숙사 건립(농·특)	2,000	3,000	1,000
<청소년정책>	15,912	25,512	9,600
1. 기본적 경기	129	325	196
2. 주요사업	14,160	23,143	8,963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24	361	37
○ 청소년시설확충	11,194	19,552	8,358
○ 청소년단체지원	151	199	48
○ 청소년육성사회운동	230	247	17
○ 청소년 6대지표별 수련활동	86	86	0
○ 청소년선도활동	381	398	17
○ 청소년대화의 광장	1,794	2,300	506
3. 청소년국제교류등 기타사업	1,623	2,044	421

② 지방양여금 예산

21)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1996), p. 508~512 참고

시·군·구 및 읍·면·동의 청소년시설 건립과 육성관련 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예산은 1995년에 136억 5천4백만원, 1996년에 189억 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9%정도 증가하였다. 1996년도 지방양여금 예산의 사업별 규모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수련실 등 시설확충 경비로 150억 3백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9억 7천 1백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사업에 20억 1천 6백만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표 III-3> 지방양여금 예산

(단위:백만원)

사 업 명	1995예산(A)	1996예산(B)	증감 (B-A)
계	13,654	18,990	5,336
1.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청소년수련관, 시·군·구, 읍·면·동 수련실 설치)	11,360	15,003	3,646
2. 청소년 공부방 운영	1,453	1,971	518
3.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841	2,016	1,175

③ 청소년육성기금

ㄱ) 청소년육성기금 조성계획

청소년육성기금은 차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투자로 인적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청소년육성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01년까지 3,000억여원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으며 연차별 조성계획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4>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장기계획(1992~2001년)

(단위:억원)

합 계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전입금	부담금	민간출연	운용수익
3,000	1,000	1,000	300	200	500

ㄴ) 청소년육성기금 조성현황

기금조성의 주요재원은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예금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출연금 200억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마련하여 1995년도 말까지 국민체육

진흥공단으로부터 460억원이 전입되었고, 예금이자는 기금의 예탁에 대한 이자로서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5년말 현재 239억 6천 8백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다.

<표 Ⅲ-5> 기금조성현황(1995년)

(단위:백만원)

구 분		1994년도까지	1995년도까지	누 계
수입	국고출연금	10,000	10,000	20,000
	국민체육진흥기금전입금	36,000	10,000	46,000
	사회 특별적립금전입금	3,150	-	3,150
	민간출연금	10	-	10
	예금이자	16,364	7,604	23,968
	반납금	167	146	313
	소 계	65,691	27,750	93,441
지출	청소년사업지원	14,191	4,499	18,690
	비품감가상각비등	15	-	15
	소 계	14,206	4,499	18,705
순 조 성 액		51,485	23,251	74,736

ㄷ)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의 연도별 실적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조성 기간이 짧아 현재까지의 조성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그 수익으로 청소년사업을 지원하여 왔다. 기금설치 원년도인 1989년도에는 기금조성액이 극히 빈약하여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4개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도에는 청소년 종합센터 운영등 12개 사업에 8억 5천만원, 1991년도에는 청소년상담실 운영등 11개 사업에 10억 4천만원, 1992년도에는 청소년상담사업등 10개 사업에 15억 2천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1993년도에는 청소년육성정책개발등 20여개 사업에 16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1994년도에는 90억 4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1995년도에는 가출청소년 선도 및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등 45개 청소년육성사업에 45억원을 지원하여, 1995년말 현재 187억여원을 청소년건전육성사업에 투자하여 우리 청소년을 바르고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1992년도에 청소년시설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보강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제도를 실시하여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1995년 말 현재 개인 또는 단체에 94억 2천 7백만원을 융자해 주었다. 앞으로도 청소년육성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과 같은 정부예산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청소년육성 관련 순수 국고지원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Ⅲ-6>과 같은데 이를 보면 청소년육성관련 국고지원예산은 1994년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GNP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37수준에 놓여있다.

<표 Ⅲ-6> 청소년육성관련 국고지원예산

(단위:억원)

구 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지 원 금	223	162	301	409

출처:문화체육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6)

청소년육성 부문에 대한 청소년행정기구와 타부처의 청소년관련 총지원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93년도 이후 정부지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1995년도 보다 1996년도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7> 우리나라 청소년육성 공공부문 재정규모 변화

(단위 : 백만원)

년 도	총 예 산	청 소 년 행 정 기 구		타 부 처 청 소 년 관 련 예 산	
		예 산 액	전년도대비 증가율(%)	예 산 액	전년도대비 증가율(%)
1993	94,628	94,628	-	-	
1994	265,708	122,075	29.0	143,633	-
1995	321,181	159,785	30.9	161,396	12.4
1996	395,197	196,206	22.8	198,991	18.9

출처:문화체육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6)

한편 이를 교육재원의 실태와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1995년도 교육비는 12조 4천 958억원 규모로 국민 총생산(GNP) 대비 약 3.84% 수준으로, 1994년 3.76%에 비해 약 0.08% 상승했다. 이러한 교육비 규모는 전체 정부예산 54조 8천 450억원의 약 22.8%를 차지하는 것이다. 1995년도 교육예산은 1994년도 대비 14.9%의 교육비가 증가되었으나 교육재정의 실태도 역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현재의 교육예산 규모를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이다.²²⁾

22) 통상적으로 교육재정의 공공교육비는 공적인 회계절차를 거치는 모든 교육비로서 학생납입

<표 Ⅲ-8> 정부예산중 교육예산의 구조별 규모(1995년)

(단위:억원)

교 육 예 산 124,958(정부예산의 22.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105,712(84.6%)	교육본부 및 기타 19,246(1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75,842(71.7%)	지방교육양여금 29,870(28.3%)
내국세총액의 11.8% 47,965(63.2%)	외부교육기관교원 27,877(39.4%)

출처: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1996)

<표 Ⅲ-9> 정부예산중 지방교육예산 규모(1995년)

(단위:억원)

구 분		1995	1994	비 교 증 감	
				예산액	비 율 (%)
G N P (A)		3,253,00	2,895,000	358,000	12.4
정 부 예 산 (B)		548,450	475,939	72,511	15.2
교 육 예 산 (C)		124,958	108,894	16,064	14.8
지 방 교 육 재 정 예 산	일 반 회 계	75842	68,191		
	교육환경개선 특 별 회 계				
	지방교육양여금 관리특별회계	29,870	25,691		
	계 (D)	105,712	98,882	6,830	6.9
비 중 (%)	D/A	3.2	3.4		
	D/B	19.3	20.8		
	D/C	84.6	90.8		
	C/A	3.84	3.76		
	C/B	22.78	22.88		

출처: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1996)

- 22) 통상적으로 교육재정의 공교육비는 공적인 회계절차를 거치는 모든 교육비로서 학생납입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왔다. 아래의 자료에서는 학생납입금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 이는 교육재정을 GNP의 5%로 확대한다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재경원에서는 학생납입금을 포함하여 GNP의 5%를 주장하였고 교육개혁위원회는 학생납입금은 국가부담이 아닌 만큼 이를 국가교육재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팽팽한 논쟁을 벌인결과, 학생납입금은 제외시키고 대신 그동안 교육재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과학기술원, 산업기술대학, 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교육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아래의 자료에서 교육재정 규모는 새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이다.

청소년육성재원과 교육재정의 재원에 대한 비교를 이제 아래에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교육재정의 재원은 국고, 양여금, 지방비 그리고 각종 세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처리되고 있는 교육세에서 얻는 재원이 있고 청소년육성 재원은 모두 청소년업무를 주관하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구가 운영하는 국고, 양여금, 지방비,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관련 사업예산으로 집계된다. 최근 정부는 5.31 교육개혁에서 열악한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교육세 GNP 5%의 확보를 위해 교육세를 증대시키기로 결정하여 199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의 예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교육지원재정의 확대는 정책적으로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비교해 청소년육성재원은 증가일로에 있기는하나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아직까지도 교육재정의 1/44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GNP의 0.1%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³⁾

<표 III-10> 교육재정과 청소년육성 재정의 비교

(단위:천원)

연도	교육재정규모	육성관련 공공부문 재정규모		
		총액	청소년행정기구 (중앙+지방)사업예산	타부처 사업예산
1970	145,465	-	-	-
1975	394,830	-	-	-
1980	2,018,062	-	-	-
1985	4,599,950	-	-	-
1990	8,523,807	-	-	-
1991	10,065,454	-	-	-
1992	12,181,352	86,346	86,346	**
1993	14,196,662	94,628	94,628	**
1994	16,291,089	265,708	122,075	143,633
1995*	13,718,600	321,181	159,785	161,396
1996*	17,600,000(예정)	395,197	196,206	198,991

* 1995년부터 교육재정규모에서 학생납입금이 제외됨.

** 집계된 통계치가 없음.

출처: 교육개발원(1996), 한국교육의 지표 1995,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 한국일보(1995. 8. 31.) 기사,
문화체육부(1992)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3년도 시행계획 참조

- 23) 청소년육성예산을 보면 주관 행정부처 이외에 타부처 관련예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체 공공부문 청소년육성사업 예산 가운데 타부처 예산이 주관 행정부처 예산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재정규모에는 타부처 교육관련 사업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96년도 정부예산 중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출의 교육지원 예산과 육성지원 예산을 비교해보면 <표 III-11>에서 제시된 바와같이 정부예산에 대비하여 교육지원 예산은 28%를 차지하는데 반하여 육성지원예산의 경우는 0.63%로서 정부의 육성지원예산은 교육지원예산의 1/44로서 2.28%에 그치고 있다.²⁴⁾

<표 III-11 > 정부예산대비 청소년육성 지원예산과 교육지원예산 비교(1996)
(단위:억원)

구 분	지원예산금액	비 교
정부예산 총액 (A)	629,626	
청소년육성지원예산총액(B)	3,951	$B/A \times 100 = 0.63$
교육지원 예산총액 (C)	176,000	$C/A \times 100 = 28.0$

출처:한국일보(1995.8.31), 문화체육부,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1996년도 시행계획

1995년도에는 이보다도 못해 청소년육성부문 총예산은 교육부문 총예산 대비 2%이며, '95 청소년육성부문 총예산 중 관련부처 사업예산을 제외할 경우, 교육부문 총예산의 1%(GNP 대비 0.04%)에 불과하다.

<표 III-12> 교육과 육성의 재정규모 비교(1995)
(단위 : 백만원)

부문		청소년육성부문		
내용	교육부문		'95	'96
재정규모 (GNP대비)	13,718,600 (4.53%)		321,181* (0.09%)	395,197 (0.09%)
예산내역	국고 9,383,000	국고	30,098***	40,895
	양여금 2,987,000	양여금	13,654	18,990
	특별회계 125,800	청소년육성기금	14,309	16,300
	지방비 1,222,800	지방비	101,724	120,021
		중앙관련부처사업예산	161,396**	198,991
지출내역	지방교육 7,584,200	가정과학교의역할증대	2,691	2,592
	재정교부금			
	일반회계 1,798,700	청소년보호 및 선도	171,343	209,605
	국고사업			
	특별회계 3,072,900	건전한청소년활동의지원	120,346	154,780
	기타 1,262,800	청소년교류 활성화	1,371	2,299
		국민참여확산 및 추진 체계 강화	25,430	25,921

24) 아래의 표를 보면 청소년육성부문 예산은 교육부문 예산의 2%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육부문과 육성부문의 구조상의 차이 때문에 숫자상의 차이를 단순 대비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들면 교육부문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은 교사급여에 지출되는 반면, 육성부문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급여지출에 사용하는 예산이 매우 미미할 뿐이다.

* '95 청소년육성부문 총예산은 교육부문 총예산 대비 2%임

* '95 청소년육성부문 총예산 중 중앙관련부처 사업예산을 제외할 경우, 교육부문 총예산의 1%(GNP 대비 0.04%)에 불과함

*** '95 청소년육성부문 국고예산은 교육부문 국고예산 대비 0.3%임

자료 : 문화체육부(1994),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5년도 시행계획.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우리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제 아래의 외국의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과 비교해 보면 먼저 정부예산과 대비하여 청소년육성관련 총예산을 보면 한국 0.6%, 독일 1.8%, 일본 22.3%로서 가장 낮으며, 독일과 일본이 이미 청소년을 위한 기초시설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낮은 지원예산 중 많은 부분이 청소년을 위한 직접투자보다는 아직까지도 시설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13 > 주요 외국의 청소년육성부문 공공예산 비교

(단위: 명)

국가명	청소년부문 공공예산	비교(청소년인구)
한국 (남한)	공공부문 전체 3,952억('96) (정부예산대비 0.6%) -주무부처 국고 409억 -양여금 190억 -청소년육성기금 163억 -지방비 1200억 - 관련중앙행정기관 1990억	4,445만 (9-24세)
독일	관련분야 총예산(학교밖에서의 청소년육성) 10조 3,545억(정부예산대비1.8%)	8,853만 (9-24세)
프랑스	관련분야 총예산 통계치 미확인 -주무부처 국고 8억6백만프랑(95) -단체생활기금 2천6백만프랑(95)	5,600만 (20세 미만)
영국	관련분야 총예산 통계치 미확인 -주무부처 사업예산 530만 파운드 -청소년활동개발기금 40만 파운드	1,860만 (25세 이하)
일본	관련분야 총예산 5조 66억엔(95) (정부예산대비 22.3%)	1억 2,503만 (9-24세)
미국	미확인	2억 4,800만(92) (18세 미만)

출처 :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주요 외국의 청소년활동 정책 - 프랑스 체육청소년부(1995), 독일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1995) 발간자료

위의 표에서 비록 외국의 청소년육성재원의 공공예산에 대한 비교를 해보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재원을 정밀히 비교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우선, 각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 분야의 범위를 한정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년소녀 가장을 포함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재정지원이 청소년정책 분야에 포함되지만 프랑스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 해당되어 그에 해당되는 막대한 예산이 청소년육성부문 공공예산에서 제외된다. 이것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통계수치가 세부 정책분야별로 집계되어 있어야 하나, 공공예산은 대부분 행정기구 구조에 따라 집계되기 때문에 추산하기조차 어렵다. 이때문에 비교적 가장 합리적인 비교는 각국의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국고사업예산과 청소년관련 각종 기금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정확한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각국의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위상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프랑스의 청소년체육부의 분야별 예산은 아래와 같다.

<표Ⅲ-14>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분야별 예산

지출분야	1990년 (총예산:24억6,900만프랑)	1995년 (총예산:29억7,400만프랑)
일반행정	29%	30.3%
청소년 및 단체생활	25%	27.1%
스포츠 및 체육활동	41%	39.4%
시설	5%	3.2%

출처: 프랑스 체육청소년부(1995), Le ministèr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이와 함께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른나라 주요도시의 청소년 1인당 지원예산을 비교해 보면 <표 Ⅲ-15>와 같이 서울이 5,742원, 런던이 107,900원 파리 85,000원, 도쿄 45,000원으로서 타국가에 비해 가장 낮은 지원수준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15> 각국의 주요도시 청소년육성 지원예산 비교

(단위:원, 기준년:1992)

국 가 명	주요도시	청소년 1인당 투자비	비 고
한 국	서 울	5,742	도시청소년 수 대비 정부지원 예산
영 국	런 던	107,900	
프 랑 스	파 리	85,000	
일 본	도 쿄	45,000	

출처 : 경향신문, 1995. 2. 18.

2. 청소년육성 민간출연을 위한 한국기업의 역할 및 기업재단의 공익활동

위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청소년육성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청소년육성이 청소년들의 교육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육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육성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의 청소년육성재원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여 현재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약 1/44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실로 심각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는 일반적 중요성의 외침과는 무관하게 청소년육성을 위한 투자는 실로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할 정도로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정부는 미래의 정보화사회를 대비해 선진국수준인 GNP대비 5%이상의 교육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최상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실상은 대부분 경제성장의 도구인 고도의 과학기술 지식의 개발 및 습득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설비 등에 투자가 될 뿐이지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인성을 바르게 하기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관한 투자는 아닌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은 미래의 건전한 사회를 향해 굴러가는 수레의 양바퀴인 것이다. 지성과 덕성이 잘 조화된 참된 청소년들을 키워내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오랜동안 추구해 왔던 최고의 이상적 인간형성과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는 바른 길인 것이다. 이에 정부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중요성 인식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민간, 특히 기업들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출연은 교육과 육성의 재정적 불균형을 메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길임으로 기업의 자발적 청소년육성을 위한 출연과 이를 위한 정부의 조세혜택 등의 법제도적인 환경조성이 매우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은 민간기업들이 그들의 소득중 많은 부분을 출연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도 청소년육성을 위한 민간출연을 위해 일반적으로 또한 법제도적으로 많은 의미가 주어져야 하겠고 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가. 청소년육성을 위한 민간출연에서 한국기업의 역할

‘기업’(business)이란 개념은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는 機關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管理的인 측면에서 보면 경영기능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人的인 관점에서 보면 경영인으로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²⁵⁾ 일반적으로 공동사회가 서서히 이익사회로 넘어가면서 기업은 우리에게 이익사회의 대명사로 이해되어져 왔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개인이나 집단이 이윤추구라는 뚜렷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조직화된 기업은 점차 국가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제 와서는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은 인간사회에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가져다 줄 만큼 인간개인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원래 초기 산업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은 기업의 일상적 경영관리 활동에 영향

25) 신유근, 기업과 사회, 서울:경문사(1992), p. 9 참고

을 미치는데 한정되었으며 정부는 기업과는 거의 무관한 사적 존재였다. 그후 자본주의가 발전하여 값에 따라 점차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문제가 점차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기업은 서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내지 사회적 반응이 제기되고 기업과 사회의 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의의를 갖게된 것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익 또는 이익집단의 조직화된 활동이 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다원사회가 성립하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전통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던 기업, 정부, 근로자, 소비자에 대하여 지역사회나 공동체라는 새로운 이익집단이 등장하게 되고, 다원주의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여러 이익집단의 기업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정부가 이러한 제 요구와 기업의 반응을 조정하는 역할을 떠맡게 된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하게 된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이는 대기업이 인류역사에 등장한 것이 이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서양의 대기업은 1880년대 이후 제2차 산업혁명 후에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기업이 성장하면서 점차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는 기업이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이 것인가에 대한 재판까지도 일어난 사례가 있을 정도다. 한국기업의 성립과정을 살펴보면 한국경제는 전통적으로 다른 농업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위주의 경제여서 국민의 생활이 그 해의 기후에 따라서 결정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후에 의한 기근이나 흉궁기에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일찍이 삼국시대 이후부터 정부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간의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로 사람들의 가치관도 많이 변화했다. 전통적인 서로 돕는 미풍양속의 한국문화는 일제시대와 6.25 그리고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사회 구조의 빈동을 경험하면서 지역공동사회에 있어 상호부조의 전통이 약해져 왔고 경쟁산업사회의 대표적 징후인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심화되어서 자본주의가 무르익어 갈수록 전통적인 사회봉사나 상호부조의 공익적 사회전통이 약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후기 산업사회에서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의 팽배속에서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이제 필요에 따른 공급이 수요한계에 못미치게 되었으므로 국가도 민간들의 사회공익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²⁶⁾ 먼저 한국의 경제성장모형은 정부 주도의 성장제일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이었기 때문에 민간부문, 특히 비영리부문이 지금까지 매우 취약하여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비해서 시민조직이나 기업 등을 통한 공익활동 부분인 비정부민간조직(NGO) 등의 활동이 저조한 편이다. 물론 기업부문이 과거에 비해 많이 성장하였으나, 한국은 여전히 정부와 영리부문(기업)이라는 제1부문과 제2부문이 사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으며, 비

26)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 - 한국기업재단총람, 서울(1995), p. 10 ~12 참고

영리 민간부문인 제3부문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복지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성장제일주의 경제는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설비투자에 두었기 때문에 복지지출은 최근까지도 거의 무시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비영리법인 부문이 국민복지의 상당부분을 맡아서 사회로부터 얻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일찍부터 발달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다시말하면 이처럼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의 수준이 그 인식도나 실행정도가 아주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의한 사회복지가 더욱 큰 역할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대다수는 1950년대 중반을 전후하면서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시기는 또한 우리나라에 최초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된 시기였다. 그후 20여년간 한국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민간기업 부문도 크게 성장하였다. 정경유착의 부정적 측면이 독재개발정책 아래에서 많은 부작용을 유산으로 남겨 지금까지 그 진통과 후유증을 앓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수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중앙집권의 계획경제로 대기업 위주의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를 꾀하여 세계가 주목할 만큼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1975년 이후 삼성, 럭키, 현대, 한진, 효성, 쌍용, 대우, 두산, 동아건설, 신동아 10대 한국의 대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힘입어 한국 경제성장 신화를 창조해 낸 주역들로서 1인당 국민소득을 만불대로 진입시키는 등 적어도 외형적 측면에서 이러한 대기업의 우리경제사회 성장에 대한 공헌은 부인할 수 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이 지금까지 경제적 부를 축적해 온 과정에 대해서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한국의 민주화과정을 통해서 1961년에서 1987년에 이르는 권위주의적 정치환경 아래서 급성장한 기업집단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이 더욱 거세어졌다. 그러한 비판 중의 한가지는 기업이 지나치게 정치권력과 부착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부를 이용해 뇌물공세, 선거자금지원 등 정치인들에게 아편 같은 부정적 역할을 해서 정치권의 풍토를 어지럽혀 결국 전체적으로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적 성장과 분배 보다는 ‘빈익빈 부익부’의 전형적인 잘못된 자본주의의 표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하고 있는 건전한 생산, 고용 등의 정당한 경제행위를 통해서 우리사회에 기본적인 책임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윤의 일부를 청소년육성 등의 공익활동들을 통해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사회적 책임의 인식과 함께 실천행위를 함으로서 건전한 기업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 한국기업재단의 공익활동 현황

먼저 기업재단의 개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기업재단이란 기업이 학술연구, 교육, 문화, 학술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독단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업재단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부터 조성하며 기본재산을 갖고 이를 운용해 공익사업을 펼치게 되는데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아 법인격을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

나 기업재단은 실질적으로 후원기업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많은 기업재단이 후원기업의 직원을 위한 교육기관, 문화기관과 직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기업재단의 활동은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기부행위 또는 기업의 사회공헌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직접적인 기부행위는 오직 기업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업이윤의 증감에 영향을 받으나 기업재단은 기업의 이윤 증감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익이 많은 시기에 기업은 그들의 이익을 기업재단 기금으로 조성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시기에 자선활동에 활용한다. 재단은 기업이 재단을 설립할 경우 매년 기업의 수익에 좌우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유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재단을 통해 공익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어 공익생활의 복지를 내용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의 주체로서 기업과 그 구성원을 사회공익활동의 참가자로 의식화 시키지 못하고 기업의 홍보효과만을 겨냥하거나 조세의 부담에 따른 유용적 선택으로서 재단을 설립하여 출연함으로써 결국 기업의 이미지 관리 차원의 상업주의적 발상이거나 재단에의 출연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기업재단이 설립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²⁷⁾

21세기에도 개인이나 정부의 복지국가에 대한 이상은 계속 추구될 전망이다. 특히 의학과 보건학의 발달로 인한 인구의 노령화는 가속화될 추세이고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와 양로원 등의 노인인구의 복지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세율을 높여야하고 이는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복지를 국가가 전담할 수가 없게 되고 정부, 개인, 가정, 기업과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그러한 복지제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국민의 복지를 위한 상황에서 기업과 재단의 역할이 점차로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여러나라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복지제도는 미흡하고 전통적으로 중요하던 가족의 복지제도도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속에서 점차 각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복지시설, 기업, 공익재단과 기타 비정부,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공익재단이나 기업의 상황은 전통적으로 정부주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재단은 1939년 재단법인 경방육영회와 주식회사 삼양사의 양영회가 설립되어 자라나는 후세를 위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후 매년 기업재단의 설립이 증가하여 7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많은 기업재단이 설립되었다. 그후 80년부터 90년대까지 무려 25개의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90년대 이후부터는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업분야별로는 장학사업, 학술연구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89개중 66개로 74%로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 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온 사회복지사업은 80년대 이후 가장 활발하였고 향후 기업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업문화계승 및 문화예술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재단의 을

27) 위의 책, p. 34 참고

연형태는 개인이 출자하여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설립당시 51.9%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과 기업인이 출연한 재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은 1960~80년대에 이르는 독재개발시기에 정부와의 밀착상태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체질이나 의식이 정부 의존적 양태를 보이고 있다. 즉, 정부나 정치집단이 요구하는 반강제적 기부와 또한 인간관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내어놓는 식의 사회봉사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변화는 차사회와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기업이나 기업재단이 조직적 능동적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식이 아직은 결여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의 많은 공익재단은 정부와 사회일부의 의심을 받고 있는 어두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즉, 대기업집단의 지배가축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단에 주식을 출연한다는 가정하에서 규제를 받고 있고 이외에도 재단에 대한 출연, 의사결정, 기금의 투자와 사업내용에까지 일일이 간섭을 받기 때문에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정부규제 때문에 손발이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이다. 설립자나 기업자체도 재단에 대한 태도가 조직적이지 못하다. 재단이 영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무국을 둘 수도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재단이 기업의 총무부나 인사부에서 부수업무로 재단업무를 보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재단의 사무국장이나 행정책임자들도 기업의 경영자나 관리자가 임시로 와있거나 겸직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재단자체의 발전이나 재단요원들의 전문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재단이 기업그룹의 일부로서 그리고 기업의 이해에 맞게만 운영되기 때문에 재단은 자체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로 인해 재단의 관리자나 직원들에 대한 귀속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단들간의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재단이 전혀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단협의회나 재단의 대표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약하면 현재 한국재단의 문제점은 재단자체의 독립성의 결여와 정부의 지나친 규제의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이러한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일은 아니다. 한편, 한국재단의 국제화 필요성은 해외 선진재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아울러 재단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기업재단의 해외에서의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한국기업의 국제적 위상정립과 국제경제사회에서 한국경제의 도덕성을 알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고 세계속의 지도국가로 발전하는데 공헌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기업재단의 유형에 따른 사업을 살펴보면²⁸⁾ 사업은 장학 및 학술연구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재단별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업재단중에는 복지사업비 지원이 가장 많고 학술연구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사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89개 기업재단의 '92년도 총 사업비규모가 1,950억원에서 '94년말 총 사업비 3,354억원으로, '95년도 예산 사업비는 6,090억원으로 '92년 대비 약 6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8) 위의 책, p. 30~32 참고

<표 Ⅲ-16> 사업비 총괄표

(단위:백만원, %)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예산)
총 사업비	105,000	152,752	335,614	411,539
증가율(전년비)	-	145.43	219.7	122.6

출처: 전국경제인연합단체회,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1995)

한편 사업부문별 사업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재단은 '94년 이래 총 사업비의 42.6%인 374억원을 기타(의료시설건립, 문화관 건립)사업명목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였고 그 다음이 사회복지, 교육진흥, 학술연구, 문예진흥사업 등의 순위를 지키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미술관 건립이나 의료시설 건립사업 등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이 커진 것은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업이 크게 증가되는 반면 교육진흥사업 및 학술진흥사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은 공익법인의 활동영역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장학재단으로서의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재단도 역시 사업의 다양화와 기업의 공익활동을 홍보하는 이벤트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17> 사업부문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

사업별	사업비				지원부문
	누계(설립이후)	%	1994년말	%	
교육진흥사업	118,188	29.3	14,584	17.2	국내외 중, 고, 대학교, 대학원, 유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학술연구사업	61,880	15.3	14,287	16.8	학술발전을 위하여 학술단체 및 교수연구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75,179	18.6	16,560	19.9	불우시설지원 및 의료비 지원
문예진흥사업	13,197	3.3	1,718	2.0	문예진흥을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행사 및 시상	23,631	5.9	4,665	5.5	지역행사 및 지정시상금 지급
기타사업	111,619	27.6	32,701	38.6	시설건립 및 도서출판, 기자재등 지원
계	403,694	100	84,515	100	

출처: 전국경제인연합단체회,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1995)

3. 청소년육성의 민간참여 현황 및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역할이 이제는 단지 경제적 이윤추구로 인한 개인과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주변사회로 부터 얻은 이윤을 주변 사회속의 노동자, 일반국민, 더 나아가서 지구촌의 세계인류를 위한 기업재단의 공익활동 등을 통해 재분배하여야 하는 기업의 윤리가 이 시대에 요구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역할과 기업의 재단활동을 통한 공익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육성을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 및 투자는 청소년육성의 중요성에 비해 거의 전무할 정도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의 청소년육성의 민간참여 현황 및 문제점과 이러한 청소년육성에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예로서 청소년육성을 중추적으로 돕고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출연의 관계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정부가 청소년육성을 위한 민간출연 확대를 위해 어떠한 법제도적인 개선을 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가. 청소년육성을 위한 민간참여의 근거 및 기본방향

21세기를 맞는 개인과 기업은 참된 발전을 위하여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기여 뿐만 아니라 사회로 부터 신뢰받는, 덕망있는 개인과 기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인 바른 청소년육성에의 민간출연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구와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청소년육성에의 민간출연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는 청소년육성의 개념적 고찰에 따른 의미와 필요성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고 이제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현실적으로 청소년육성의 실천이 왜 시급한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²⁹⁾ 첫째, 이미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육성예산의 제약과 부족으로 인한 재정적인 필요가 우선적이다. '95년도에 경우만 보더라도 청소년관련 정부예산은 GNP대비 0.04%에 불과하고, 말로는 청소년 육성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근시안적인 기술지상주의적 경제산업주의만을 최고의 현실적 가치로 수용하여 지식교육에만 치우치고 청소년들이 학교밖의 자연과 생활 속에서 인성과 신체를 연마하는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아주 미흡해 국정 우선순위가 매우 낮으므로 획기적인 예산증액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련 재정의 또 다른 재원인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실적마저 저조하여(95년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입된 460억 포함 총 74,736백만원) 예산과 재정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둘째,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규정되어(헌법 제31조) 국가의 막대한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육성”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헌법 제34조)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강조되며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민간출연 증대를 위해 청소년육성 관련기관의

29) 황창순, 청소년 수련사업에 재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 서울:청소년연구원 (1992), p. 15~17 참고

운영지원 출연시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청소년기본법 제68조), 조세감면규제법의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관련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각호에 이와 같은 사항이 누락됨으로써 청소년육성정부문의 활성화에 근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 기본계획의 재정조달 및 민간참여 계획에 따라 청소년 관련 활동의 많은 부문에서 민간참여를 계획하고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재정경제원이나 기타 정부부처의 지나친 부처 이기주의와 청소년육성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도가 낮아서 민간출연 등을 통한 재원의 조달조차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아래의 표들에서 보여주듯이³⁰⁾ 전부문을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모든 청소년관련 주요 영역에서 다양한 민간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이 따라주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표 III-18> 민간참여 및 투자가 필요한 청소년사업의 영역

활 동 요 소		민간참여계획	민간참여미계획
청 소 년 활 동	수련거리의 개발, 보급적용	○	
	수련터전의 확보 : 장소시설, 설비, 자연원수련터전, 생활권수련터전	○	
	청소년지도자의 제도적 양성배치 : 전문지도자 양성, 기본지도자의 연수, 자원지도자 모집활용	○	
	청소년단체의 육성(민간단체 + 관변단체)	○	
	동기부여		○
청소년 복지	유해환경정비 : 민간감시기구의 운용	○	
	대중매체이용 건전사업육성		○
청소년 교류	요보호 청소년 지원배려		○
	국제화시대의 통일조국의 대비		○

출처: 황창순, 청소년 수련사업에 재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1992)

이러한 현실적인 현황과 문제점은 아래의 표가 더욱 더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청소년 재정의 배분 계획만 하더라도 정부의 민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서인 문화체육부의 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예산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원에서 얼마나 협조적으로 함께 도와주고 협의하고 있는지는 현실의 결과로 볼 때 조세감면규제법 등의 판계법을 살펴보면 매우 의심스럽다. 아래의 표에 의하면 정부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세가지 주요활동영역 가운데 청소년 교류분야를 제외하고는 전체 예산 가운데 청소년활동에

30) 위의 책, p. 16~17

서 52%, 청소년복지에서 45%를 민간재정에 의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대규모 수련시설이나 전국의 수련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수련터전 분야는 그 절대 총액에서 가장 많은 재정이 필요한 분야이고, 또 민자의존률도 56%로서 청소년지도자 육성분야의 55%와 더불어 민자에 대한 의존률의 가장 높은 영역이다.

<표 III-19> 청소년재정의 배분구조

활 동 요 소		민 자 배 율
1. 청소년활동(1,196,801 백만원/ 2,300,712백만원)		52%
	○ 수련거리('92. '96 민자계획없음)	0%
	○ 수련터전('92-2001까지 매년 민자계획)	56%
	○ 청소년지도자('93년부터 민자에 의존)	55%
	○ 청소년단체('93-2001까지 매년 민자의존)	52%
	○ 활동동기부여	0%
2. 청소년복지(5,698백만원/125,998백만원)		45%
	○ 사회환경의 개선('92-2001까지 민자계획)	18%
	○ 어려운 청소년지원(민자계획 없음)	0%
3. 청소년교류		0%

출처: 황창순, 청소년 수련사업에 재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1992)

셋째로는 개인과 기업 등 민간의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순수하고 건전한 요구가 있다. 실제로 교육계안에서는 국가의 백년대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순수 민간 개인독지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청소년육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교육에 육성을 포함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한 바른 국가적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기업에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청소년사업에 대한 참여와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도 범국민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기업들에게 법제도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참여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청소년육성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민간영역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는 일은 청소년육성사업의 활성화와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을 예로들면 사업의 운영이나 수련거리의 개발, 그리고 수련활동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민간의 경험과 조직, 그리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온 수련사업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1981년 코오롱그룹이 설립한 오운문화재단에서 1995년에 개원한 총면적 70여만평에 하루 수용인원이 3,040명에 달하는 대규모 청소년수련마을「보람원」이 인간과 자연사랑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심신의 단련을 통한 조화로운 발달, 공동체 생활을 통한 삶의 지혜를 터득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문화체육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연구보고한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1992)에서 분석한 수련사업에 관한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를 아래의 표에서 살펴보면 앞으로 청소년 수련사업에 공공과 민간 영역이 적절히 조화되어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청소년 수련사업에 있어 기업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정부가 시설제공 및 운영에 책임지고 기업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고 ‘정부는 시설을 제공하고 민간기업이 운영한다’가 27%, ‘기업이 시설제공 및 운영에 책임지고 정부는 간접지원을 해야 한다’가 25.8%, ‘기업이 시설제공 및 운영에 책임지고 정부는 간접지원을 해야 한다’가 25.8%,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로 답한 경우가 1.1%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생각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사업이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될 수는 없고 또 기업측에서도 완전히 떠 맡을 준비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³¹⁾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청소년 수련사업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 기업도 정부도 청소년 수련사업으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민간과 정부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두 영역의 관계를 설정한다면 수련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나 투자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20>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

항 목	빈 도	백 분 율
정부가 시설제공 및 운영에 책임, 기업은 보조적인 역할	33	37.1
정부가 시설 제공, 민간기업이 운영	24	27.0
기업이 시설제공 및 운영에 책임, 정부는 간접지원	23	25.8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	1	1.1
잘 모르겠다.	8	9.0
합 계	89	100.0

출처: 황창순,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1992)

아래의 표에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청소년육성을 위한 수련사업을 활성화시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 표를 보면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조세감면 혜택 등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일로 39%가 이를 지적했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정부와 민간의 기능분담 기준설립이 각각 19.4%로 나타

31) 위의 책, p. 96

났다. 또한 민간이양, 위탁의 적극화를 11.4%, 학제개편을 4.7%가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은 민간의 참여와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제도적인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으며 특히 공공과 민간의 분명한 관계설정과 기준설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기업의 이러한 태도가 아직은 수동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측에서도 청소년육성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표 III-21> 청소년육성 수련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항 목	빈 도	백 분 율
조세감면 혜택 등의 세제지원	41	39.0
학제개편	5	4.7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20	19.4
민간 이양, 위탁의 적극화	12	11.4
정부와 민간의 기능분담 기준설립	20	19.4
기 타	4	3.8
무 응 답	3	2.8
합 계	105	100.0

출처: 황창순, 청소년 수련사업에 재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1992)

나. 청소년육성을 위한 한국기업의 공익활동사업

청소년들이 장차 우리의 미래라는 인식은 과거에도 일반적 통념으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가나 기업이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적 투자를 해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가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급속도로 변하면서 청소년들의 일탈상황과 비행, 폭력 등의 문제가 이제 사회문제로 까지 확산되면서 정부도 청소년보호법을 만들려고 하는 등 청소년문제는 여야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적·정치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청소년문제나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관심과 아울러 기업들 사이에도 인식이 되어 서서히 청소년문제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장래와 기업의 경영적 차원의 미래에서도 젊은 사원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등에 밀접히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장차 국가는 기업의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참여와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이에 더해서 각 기업체가 청소년사업에 대해 어떤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획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는 기업들이 청소년육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법적·제도적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시정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국가나 기업에 대한 희망사항들을 조사하여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나 시설 등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³²⁾

① 기업의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인식

정부는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2년도 부터 「한국청소년 10개년 기본계획」을 시행하다가 사업물량가 배분기준에 현실성이 결여되고 새로운 소위 문민정부의 출범의 개혁의지를 담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의식개혁과 도덕성회복 등을 목표로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성을 가져 현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1993년 9월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³³⁾ 1992년도에 조사한 다양한 청소년정책이나 법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를 아래의 표에서 살펴본 결과, 청소년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과반수 정도(50.6%)가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잘 모른다’고 대답했고 ‘사업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무엇인지 대충은 안다’가 38.2%,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가 5.6%, ‘청소년 수련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가 4.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TV나 신문,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 정책에 대해 들어 본 경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함축하는 결과로, 정부나 공공단체가 실시하거나 계획중인 청소년육성사업이나 청소년관련 정책을 사회의 각 영역에 널리 전파할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체의 경우 기업체 내부의 독특한 의사결정 절차가 있고 청소년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더불어 기업과 직접 관련된 청소년 영역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전제될 때 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홍보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극적으로 알리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업의 참여 가능영역과 참여가 필요한 영역을 적절히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³⁴⁾

<표 III-22>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항 목	빈 도	백 분 을
청소년수련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	4	4.5
사업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무엇인지 대충은 안다	34	38.2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45	50.6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5	5.6
무 응 답	1	1.1
합 계	89	100.0

출처: 황창순, 청소년 수련사업에 재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1992)

32) 아래에서 조사한 각종 표의 사항들은 1992년에 순이익 10억 이상의 상장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고된 위의 책 p. 87~97의 표들을 참고 인용했다. 표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수련사업에 대한 조사로 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수련사업이 청소년육성의 핵심적 사업이기 때문에 표의 내용을 청소년육성사업 전체에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예상된다.

33) 문화체육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9), p. 3

34) 앞의 책, p. 87 참고

아래의 표에서는 현재의 청소년육성사업과 그 사업의 주수혜자인 청소년들의 만족도에 대한 기업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기업의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에서 생각하는 청소년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정도는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9.0%,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57.3%, '그저 그렇다'가 31.4%로 나타나 전체의 66.3%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체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2.2%,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타내는 사실은 기업에서도 현재의 청소년 사업의 질과 양이 청소년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집단이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표 III-23> 기업이 본 청소년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

항 목	빈 도	백 분 율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	0	0.0
대체로 충족시키고 있다.	2	2.2
그저 그렇다.	28	31.4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51	57.3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8	9.0
합 계	89	100.0

출처: 황창순, 청소년 수련사업에 재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1992)

② 청소년관련 민간기업의 참여 형태

민간기업의 청소년분야에 대하여 참여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원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수가 있는데, 그 첫번째는 무엇보다도 공익활동에의 민간참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차원이다.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고 홀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아이들, 장애인이란 이유로 사회참여의 기회조차 아예 박탈 당한 사람들, 가난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청소년들 등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의 참뜻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문화·예술면에서의 참여다. 문화는 그 민족과 사회의 정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매신저인 동시에 한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측정해주는 잣대이므로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의 문화는 그 무엇보다도 잠재력이 큰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는 물론 문학 및 스포츠활동과 대중예술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세번째로 장학사업 등 민간기업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인 학술·교육면에서 살펴본다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의 육성은 국가와 사회가 다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므로 이 분야는 특히 기업의 적극적인 자본투자가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술 및 교육 분야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기업들이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의 기업들도 스스로 이 분야를 감당하려고 하여 産·學·研 합동차원에서 기업 스스로가 학교와 연구소를 설립하여 교육과 학술의 발전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업의 투자정책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산학이 각자 자율성을 갖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산학의 협동이 잘 이루어질 때 기업도 발전하고 학교도 교육과 학술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학교가 기업처럼 투자재원을 벌어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기업의 기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세계의 많은 명문 사립대학일수록 기업에서 받는 기부금의 액수가 많다고 한다. 또 세계의 일류기업일수록 학술·교육분야에 기부금을 많이 내고있는것을 볼때 기업의 과감한 기부행위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도록 함으로 기업 스스로의 혜택은 물론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네번째로는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다. 요즈음 우리사회에도 88올림픽을 계기로 개인적·집단적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든 사회를 바로 잡아보자는 건전한 노력으로 최근들어 자원봉사활동자가 크게 늘고 있고 있고 비록 반강제적인 요소는 있지만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자원봉사의 의미를 훈련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곳곳에 확산되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주부, 공무원, 군인 등 사회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원봉사는 21세기 사회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원봉사의 사회적 주체로 기업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은 물적, 인적 자원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기업들이 사회봉사를 물적생산 못지않은 중요한 기능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사회봉사는 사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식'의 회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생산주의에 함몰되어 왜소해지고, 그와함께 사회공동체 의식조차 희미해져 가는 직원들에게 자원봉사로 사회적 주체의식, 새로운 활력과 활기를 찾도록 함으로써 외적으로는 시민의식의 부활로 사회의 보다 큰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고, 내적으로는 사원들에게 자신감과 보람을 통한 보다 큰 생산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기업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참여 및 투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지만 민간기업들의 청소년육성에의 참여 및 투자는 아직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와 지성과 덕성 그리고 신체의 건강함 등이 조화된 전인적 청소년들을 만들어내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여러차례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나 민간기업이 급속히 변화하는 우리의 기술지상주의적 경제산업정보시대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좁은 근시안적 역사관과 가치관으로 현실에만 매달려 상업주의적 경제우선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많은 청소년문제와 세대간의 갈등을 예방적 차원이 아니라 치료적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③ 기업과 청소년 수련사업 및 투자현황

이제 아래에서 실제로 기업이 청소년육성사업에 참여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이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얼마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참여 및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는 현재 참여하고 실행하는 청소년 사업과 앞으로 계획중인 청소년육성사업을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51.7%가 ‘청소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앞 절에서 언급한 전체적인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미참여율이 겨우 5.6%인 것에 비해 아주 많은 비율로서 사회참여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육성사업에서의 참여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청소년사업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는 사회영역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청소년육성사업으로는 장학사업인데 32.6%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과 심신수련활동사업, 문화예술사업에는 각각 6.7%, 4.5%, 3.4%의 기업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수행하는 청소년사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장학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처럼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참여가 용이하다는 점과 기업인들의 인재육성 목적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참여활동 유형의 구조화는 기업재단의 활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최근의 전경련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수의 기업재단이 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에서 대규모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여타 재단의 대부분은 그 설립목적이 장학 및 학술사업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³⁵⁾

<표 III-24> 실행중인 청소년육성사업

항 목	빈 도	백 분 율
장 학 사 업	29	32.6
사 회 복 지 사 업	6	6.7
심 신 수련활동사업	4	4.5
문 화 예 술 사 업	3	3.4
기 타	1	1.1
참여하지 않고 있다	46	51.7
합 계	89	100.0

출처: 황창순, 청소년 수련사업에 재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1992)

<표 III-24>에서는 각 기업이 앞으로 계획중인 청소년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앞으로 계획중이거나 수행하기 원하는 청소년사업은 여전히 장학사업이 25.8%로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이 각각

35) p. 48 기업재단의 공익활동 현황에 관한 표 참조

15.7%와 14.6%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심신수련사업과 청소년단체 지원도 6.7%, 4.5%로 나타났으며 '계획이 없다고'고 대답한 경우도 30.3%나 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재중시나 교육기회의 보장이라는 명분 이외에 우리나라 기업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안일한 자세로 청소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표 III-25> 계획중인 청소년육성사업

항 목	빈 도	백 분 율
장 학 사 업	23	25.8
사 회 복 지 사 업	14	15.7
심 신 수련활동사업	6	6.7
문 화 예 술 사 업	13	14.6
청 소 년 단 체 사 업	4	4.5
기 타	2	2.2
없 다	27	30.3
합 계	89	100.0

출처: 황창순, 청소년 수련사업에 재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1992)

청소년관련 민간투자에 대하여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한국청소년학회에서 240개 기업을 대상으로하여 기업의 순이익 중에서 전체 청소년사업과 관련된 투자 비율은 순이익의 0.86%로서 다른 민간투자부분에 비하여 미약하고 특히 청소년기본법과 관련되어 청소년육성 부분에 직접 지출된 금액은 기업 순이익 대비 0.13%, 청소년사업 관련해서는 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머지 기업순이익대비 0.73%와 청소년사업 관련대비 85.1%는 장학금 등 교육부분과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복지부분 등에 관련되어 지출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26> 청소년관련 민간투자현황(순이익 대비)

구 분	순 이 익	청소년관련 투자액	
		청소년사업 관련	청소년기본법관련 투자
금액 (억원)	25,657	221	33
비율 (%)	100.0	0.86	0.13

출처:한국청소년학회,1995

거의 같은 결과이지만 또 다른 한국청소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나 재단 등 97개 기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과 관련하여 한가지라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재단은 51.5%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장학금지급 이나 직업교육 실시 등 기업체의 필요에 의한 단기적 투자에 그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없다.

<표 Ⅲ-27> 민간기업의 청소년복지 투자현황

구 분	투자하고 있음	투자하지 않음
장학금 지급	62	32
스포츠 단체 및 시설 운영	86	11
직업교육 실시	90	7
기타 (문화, 예술 등)	72	25

출처:한국청소년학회, 1995

다. 청소년육성을 위한 민간참여 및 투자확대 방안³⁶⁾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민간들의 참여도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매우 낮다. 이는 국민들의 청소년들의 교육에만 집중된 관심과 청소년육성에의 이해부족에 먼저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 이러한 원인제공은 사실 정부의 청소년육성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부족과 이로 인한 대국민 홍보와 실질적인 청소년육성에의 투자 부족을 들 수 있다. 특히 민간기업들의 청소년육성에의 참여 및 투자를 정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참여 및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청소년육성에 순수한 관심이 있지만 참여와 투자의 방법을 모르거나 법제도적인 규제에 인하여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에의 민간참여 대상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첫째는, 청소년 사업에 순수한 뜻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정부의 유인책이 없어도 청소년육성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도 참여 및 투자를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한편 일부 청소년육성을 이용하여 이권을 얻으려는 조직이나 개인들도 있는데 이들을 구별하여 잘못된 청소년육성의 문화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민간부문

36) 이 부분에서는 이미 본원에서 1992년도에 보고된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민간참여 및 투자확대 방안에서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으므로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여 재인용한다. 위의 책, p. 145~148

에서 청소년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방법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① 민간에 의한 직접투자

직접투자는 가장 간단 명료한 형태인데, 일반적인 예를들면 기업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민간의 자유의지를 기초로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조직되고 전부 또는 일부의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기획,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부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직접 시행하는데 이들의 참가 및 투자를 고취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우선 민간이 참여하는데 토지획득 문제가 커다란 애로사항으로 제기될 것이다. 이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국유지의 유효 적절한 이용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에 대하여 토지 불하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 차지(借地) 혹은 신탁제도의 활용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민간이 청소년 사업을 직접 운영할 때 사회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정부로 부터의 각종 규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참된 욕구에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정부규제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부문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관심 사항은 역시 사업으로 부터 기대되는 투자효과 즉 경제성이다. 따라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공적 보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금융이라든가 세제상의 혜택이 마련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비용의 일부를 공공부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민이 자신의 창조적이고 자조적인 노력에 의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보다 좋은 지역사회를 구축해 가도록 주민의 자발적인 참가의욕을 북돋아 주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② 민간의 간접지원

민간참여의 두번째 방법으로는 다양한 청소년사업에 민간의 지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공적 영역에서는 재정구조의 악화로 공적 자금을 조달하는데 점점 그 한계가 나타날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도 자금조달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민간 자금을 폭 넓게 활용하는 시도가 민간의 참여를 고취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다.

③ 민간위탁의 활용

세번째 방법으로는 민간에게 주요 청소년사업을 위탁하는 방안이 있다. 공공단체에서는 그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체에서 행하는 것과 유사한 경영 방식을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수련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민간에게 경제성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민간기업이 공공부문과 함께 청소년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위한 민간참여의 모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공주도 민간보조형 모델 : 이 유형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수련사업과 같은 청소년육성에 대한 시설의 투자나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민간부문은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에 함축된 의미는 청소년육성사업의 공익성과 공공부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관민합작 모델 : 두번째 유형의 모델은 청소년육성사업을 관민합작사업의 유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도 일종의 민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민간의 우수한 재능과 경제력, 경쟁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있다. 이 모델이 앞의 모델과 다른점은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정책과 투자를 정부의 직접공급에서 민간과의 계약, 보조금지급, 이용권지급, 허가, 자조자원조직공급, 시장공급으로의 전환규제 혹은 과세조치의 이용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정부가 투자를 하되 민간이 운영을 맡아서 하는 방법과 유사하며 민간 부문으로 하여금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도록 장려하거나 기업으로 부터의 일시적 도움을 받는 형태이다.

㉢ 민간주도형 모델 : 세번째 모델은 시설이나 사업에의 투자를 민간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운영도 민간이 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성과 투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정부로서는 공익성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제도상으로는 법률적으로, 또는 조세상의 지원이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역할 분담은 청소년육성사업의 개별적인 특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일괄적인 기준으로 한다면 공공부문이 가진 공익성의 보호측면과 민간부문이 가진 서비스 공급의 양질성 및 경제성의 측면을 함께 손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의 특징에 따라 민간참여의 모델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모델로서 모든 민간참여를 획일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어떤 형태의 민간참여 모델이든지 어느 정도의 민간참여는 필수적이므로 이를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이 필요하다.

이제 지금까지의 고찰에 의거하여 청소년건강육성을 위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를 확대하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리를 해보면 무엇보다도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민간참여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진시키는 방안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청소년육성사업에 뜻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기업과 같은 조직들에게 청소년육성에 대한 깊고 새로운 인식을 통해 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토록 하여 범 국민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식화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한다. 사실 현실적으로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요구의 증대는 국가적으로 볼 때 막대한 재원을 요구하게 됨으로 공공부문에 의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서비스 공급은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소년육성을 위한 민간 및 사회부문의 참여가 시급한데 고무적인 것은 점차 이들 조직들에 의해 제공되는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자치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성숙되면 지방단위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전반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면³⁷⁾, 첫째로 이미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으로 하여금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참여 및 투자를 고취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의 청소년정책의 전반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밝혀졌지만 기업들은 정부나 민간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은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며,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적다. 물론 청소년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유치정책에 어느 정도의 보안을 요하는 민감한 주제나 기업이나 국가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기업의 전반적인 청소년육성에 대한 지식은 지나치게 빈약하다. 장기적으로 보아 민간기업쪽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하기를 바란다면 소극적인 홍보전략에서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어떤 참여대상이나 투자대상에 관하여 대상의 실체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기업체의 문화와 의사결정양식에 적절한 접근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기업이란 본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서는 유형, 무형의 보상이나 장기적, 단기적 대가가 없으면 청소년 수련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기 쉽다. 만약 최고 경영자나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입장에서 노조원의 복지적 측면을 도외시키고 기업 외부의 청소년사업 등에 쉽게 참여하거나 투자한다면 노사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측의 입장에서서는 사원복지사업과 청소년 수련사업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구상이나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립허가를 받고서 주말이나 방학에는 청소년 수련사업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평일에는 지역주민이나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청소년, 기업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이용되는 다목적 시설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육성에의 민간출연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업의 생리와 특성을 고려치 않는 참여 및 유치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37) 본 보고서 주제인 「청소년육성 민간출연 확대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92년도에 보고된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에서 이미 제시된 청소년육성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적 대안을 지지 하므로 이 대안을 그대로 인용하고 다만 본 보고서의 부주제인 '청소년육성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세특례를 중심으로'에 따라 아래에서는 이러한 대안중 민간출연확대를 조세특례의 법과 제도에 관해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위의 책, p. 148~153 참고

셋째, 궁극적으로 민간 기업체가 비영리 공익법인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공익활동에 참여 및 투자할 때 세제상의 혜택을 받아 더욱 많은 민간출연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립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게 하여 면세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물론 이럴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점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즉,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시설이나 운영비를 보조하는 근거가 있지만 청소년 수련사업에 관련된 시설은 정책적 미화와 현실상황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이상이자 또 이에 따라 정책이 입안되는 현실이다. 기획 및 실행자가 할 수 있는 작업은 현실과 이상을 접목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청소년 기본법 26조 2항을 살펴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민간참여의 방향이 잘 나타나 있는데 위의 조항에 의하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체육 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청소년 수련사업의 시설설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육성법의 청소년관련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삭제해서 영리추구 금지를 완화시켰다. 영리가 아닌데도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세법개정도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사회교육시설도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영리적 요소가 포함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 청소년 수련시설도 비영리의 정신은 고수하되 이용료의 통제나 승인제도 등을 통하여 운영비나 관리비 정도는 보장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점은 청소년 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보장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사실 기부금에 의존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민간이 출연한 시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의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야 하고, 업무용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하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한 토지에는 비업무용 요소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실태 및 세제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개선 건의를 공익사업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째, 기업이 실시하는 청소년육성사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민간참여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각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육성사업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 민간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의 문제점, 또는 장애요인에 대한 실태파악도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나 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 그리고 민간 수련원 업자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청소년육성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애로요인과 장애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해서 정책적인 대안이나 고려사항을 입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가능한 모든 2차 자료인 기록된 문서나 서류에 우선 의존하고 전혀 실태파악이 안된 분야나 잘못 파악된 경우는 새로운 연구사업이나 용역으로 자료수집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초자료나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이나 정책은 불완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섯째, 민간출연을 통한 청소년육성정책은 정부의 토지정책과 밀접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 가장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과제는 역시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보상과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의 여건에서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 및 투자유도 방안과 관련되어 토지문제의 핵심은 그린벨트와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리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린벨트가 그동안 국토의 녹지대 보호차원에서 시행되었고 또 그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이것으로 인한 폐해 또한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할 때 그린벨트의 해제나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주요 토지문제가 소위 5·8조치로 알려진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매각조치이다. 기업측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장기적 전망이나 기회에 기초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구입한 토지에 대해 지금 당장의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해서 비업무용으로 관정되고 그래서 강제 매각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이 뼈아픈 일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가 국가의 토지정책에 장애나 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요소가 있어 보이기 는 하지만 청소년 수련사업을 위해 기업에서 비영리 공익재단에 토지를 출연할 경우에 한해서는 강제 매각조치에서 유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정부도 민자의 유치에 결정적인 요인이 토지를 둘러싼 제반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도 타부처와의 협의하에 주요 관계법령의 개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청소년육성을 위한 민간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세제 및 법령의 개선과 조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건설관련 법령 못지않게 청소년육성사업과 관련이 깊은 분야가 정부의 각 부처와 다양하게 연관된 다양한 세제에 관련된 법령 등이다. 최근의 이러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³⁸⁾ 청소년육성을 위한 문화체육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 등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재산 기증시 증여세 면제 등에 관하여 조세제도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재정경제원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살림을 위하여 조세를 지키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문화체육부와 재정경제원의 협의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 이하 정부 수뇌진들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확산과 실질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민간출연에 조세혜택 등을 통하여 청소년육성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을 함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과 제도에서 건전하게 육성되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한다는데 사고와 행위를 모아야 한다.

이제 아래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육성의 민간출연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들 중에서 실제로 청소년육성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조세특례제도가 어떻게 민간기업들의 출연을 막고 있는지 또는 민간기업들의 출연을 조세제도를 개선함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8) 손원익 외, 기업의 문화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 - 중간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1996, p.66~70, 157~165 참고

IV. 청소년육성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세특례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1. 청소년육성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세특례제도 현황

청소년육성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여 사회적 공공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³⁹⁾ 이러한 청소년육성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세법상의 위치는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 기관으로서 법인세법에서는 공공법인으로,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육성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민법 제32조」, 「청소년기본법」, 「기타 특별법」 등 <표 IV-1>에서와 같이 여타의 법률⁴⁰⁾에 의해 설립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세법에서는 공공법인 또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이해함을 의미한다.⁴¹⁾

<표 IV-1>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근거법률

사 업 명	근 거 법	설 립 방 법	주요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허가	사회복지사업
강생보호회(법인)	강생보호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허가	강생보호사업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 신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설립허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 학술·자선에 관한 사항
교육법인	교육법(사립학교법)	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	교육사업
의료법인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허가	의료업무및교육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	청소년활동사업
스카우트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스카우트활동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산하조직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내무부장관 설립인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불교단체	불교재산관리법	문체부에 등록	
향교단체	향교재산법	시·도별로 재단법인 설립	
비영리 사단·재단	민법제 32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한 법인 설립등기	학술·자선·종교·예술·사교 기타비영리사업

출처: 문병엽, 공익법인의 조세특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92)

39) 이러한 청소년육성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대표적 기관은 현 「한국청소년개발원」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1989년 ‘청소년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연구원」이 1993년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으로 전면 개편하여 출범하였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기본법의 내용과 주무부처의 기본정책을 골간으로 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환경개선, 청소년관련 생활개혁, 청소년교류확대 등에 관한 국가적 기과과 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40) 김정환, 1988. ‘공익사업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월간조세 9월호, p.73.

41)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자선, 종교 등 공익성 비영리공익법인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142개 공공법인은 <별첨 1>에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이해를 국가조세법상의 고찰에 따르고, 우리나라의 민간출연⁴²⁾을 유도하는 조세특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인출연자들을 대상으로하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의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법인이나 단체출연에 대한 법인세법과 특별부가세 현황을 제시하고 셋째, 민간출연금을 받은 공익기관들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인세, 상속세, 지방세 특례조치 및 사용제한에 관한 현황을 연구하며, 끝으로 조세제도의 현황과약을 통하여 민간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제도상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출연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① 개인 출연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현재 개인에 대한 과세규정으로는 크게 개인의 소득에 대해 일정액의 과세를 하는 소득세법과 상속이나 증여⁴³⁾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받게 될 경우에 과세하는 상속세법 등이 있다. 조세법에는 국가는 공공성이 높은 공익부분에 대해 개인이 그 소득이나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일정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대한 참여증진과 사회적 복지욕구를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공재에 해당하는 공익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해야 하는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당연히 과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개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에 정한 법정기부금⁴⁴⁾에 대해서는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여 감면토록하고, 지정기부금⁴⁵⁾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⁴⁶⁾ 세제혜택을 주

42) 출연이라 함은 어떤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현실의 출비나 의무의 부담 등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옴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서는 출연에는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3) 상속세는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상속재산을 과세객체로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증여세는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부과하는 조세이다.

4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정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1996년 12월31일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연구기관과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

② 내국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교 병원 등에 출연금,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등으로 지출한 기부금

③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45) 위의 소득세법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별첨 2>에 따른다.

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법정기부금에 한해서는 전액,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소득의 5/100을 공제하고 있으며, 이범위를 초과하거나 기타 다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과세를하고 있다. 이것은 <표 IV-2>에서 제시되듯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미국은 필요경비 공제후 소득의 50%, 일본은 소득의 25/100를 감면, 독일의 경우 자선 및 학술 등에 대해서는 소득의 10%, 프랑스는 필요경비공제후 소득 금액의 5% 한도에서 기부금액의 40%를 실질세액감면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⁷⁾

<표 IV-2> 각국의 기부금관련 제도

국 가	기부금의 종류		공 제 한 도 액	
			법인기부금(법인세)	개인기부금(소득세)
한 국	법정기부금		년소득-이월결손금	전액소득공제
	지정기부금		(년소득-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액)×7%+자기자본(50억한도)×2%	-개인사업소득, 부동산 소득이 있는자:법인과 동일 -근로소득자: 소득의5%
	비지정기부금		손금인정 안됨	
일 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액손금산입	연중지출한기부금합계액 (소득의 25% 한도)에서 1만엔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손식 사용 외에 그 동액까지 손금에 산입	
	일반기부금		(자본 등의 금액×0.25%+소득금액×2.5)×½	공제없음
미 국	특별히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		과세소득의 10%	조정총소득의 50%공제
	기타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조정총소득의 30%공제
영 국	급여등에서 공제 되는 기부금		없음	연간 900파운드 공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상기 이외의 기부금	전액손금산입	당해금액을 공제한 경우의 기증자에 대해 세액경감상당액으로 수증자에게 세액환부
독 일	특별히 장려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목적의 기부금		다음 중 큰 금액 ①연간총매상고와 지불 임금을 합계한 금액의2% ②소득의 5%(자선학술및 가치있는 문화목적의 기부금은 10%)	법인과 동일
프랑스	특별히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		연간총매상의 0.3%	조정총소득의 5%한도로 기부금의 40%세액공제
	기타 일정한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연간총매상의 0.2%	조정총소득의 1.25%내에 기부금의 40%세액공제
	일정 연구기관에 대한 기부금		연간총매상의 0.2%	공제없음

46) 개인에 대한 지정기부금 산출 산식은 다음과 같다. [(당해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이월결손금) × 5/100] 만큼에 대하여서는 필요경비, 즉 손금에 산입토록 한다.

47) 박상용, 1995, 「한국공익재단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기업재단의 세제와 법규의 변천’, 동서문제연구원 동아시아연구논총 제4집, (서울: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p. 48

(註) 년소득 = 익금총액-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제외한 손금총액

조정총소득:필요경비 공제후 소득임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기업의 문화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중간보고서(1996)

둘째는 개인이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하여 기부금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법에
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영리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면제규정
만 있고 그 외의 법인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기타단체⁴⁸⁾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모든 비
영리법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8조의2⁴⁹⁾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한 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 및 지급, 학술, 자선 등 공익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⁵⁰⁾에 제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⁵¹⁾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 그러나 상속세법은 각 공익사업의 종류에 따라 공익활동에 장애가 될수있는 요
소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될 시에는 상속세과세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는 모두 대외적 우
대조치로 국가가 공익법인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외부에서의 공익법인
에대한 출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
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출연자에게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출연받은 법인에 대하여 출연금의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
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② 법인 출연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48)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법인격이 없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단체
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상속세법을 적용한다.

49)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다음각호에 제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세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
사업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
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②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50) 상속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2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으로는 <별첨 3>의 사업이 해당된다.

51)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상속세법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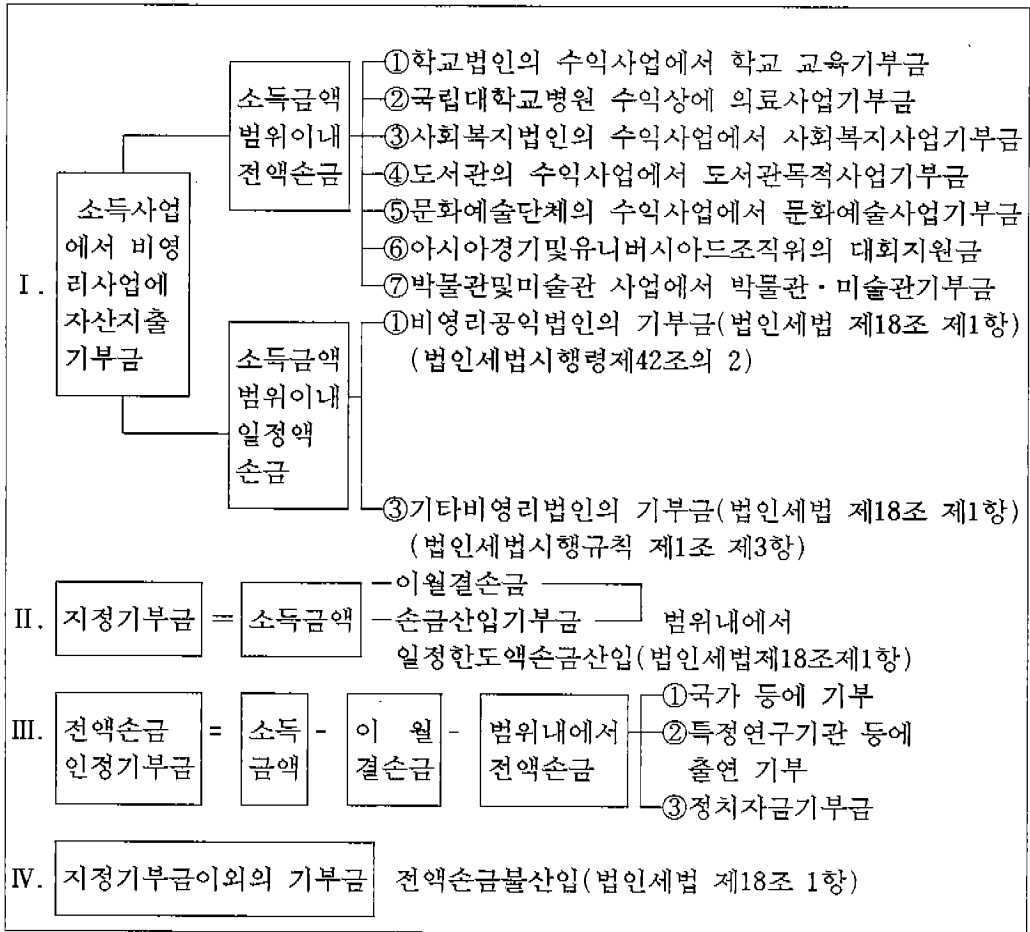
②당해 공익사업의 운영이 상속세법상의 요건을 계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③출연재산 중 주식출연의 경우에는 일정비율 이하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④위의 세가지조건에 맞추어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이어야 한다.

기부금을 출연에는 전술한 개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이외에도 기업이나, 공공법인, 비영리기관, 기타단체 등이 공익사업이나, 다른 비영리공익법인에 제공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도 각종 조세특례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출연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3> 기부금 유형별 조세특례



출처: 박충환, 비영리기관의 회계(1996)

보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재산출연에 대해 국가는 법인세법 제18조의 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규정에서 법인의 종류에 따라 기부금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첫째, 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이나 공익사업에 출연할 경우로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보면 먼저,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손금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법정기부금 손금한도액>

$$\text{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 \text{손금산입한도액}$$

법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손금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정기부금인

-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 국방헌금과 홀병금
- ㉢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에서 규정한 공공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모두에게 소득의 범위내에서 전액손금산입 된다. 다음으로 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처리 가능한 금액으로서 산식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부금 손금한도액>

$$(\text{소득금액} - \text{국가 등에 지출한기부금 중 손금산입금액} - \text{이월결손금}) \times 7/100 + \text{자기자본}(50\text{억한도}) \times 2\% = \text{손금산입한도액}$$

즉, 기업이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해 지정기부금은 기업소득금액의 7% 와 자기자본 (50억원을 한도로함)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으로 정해 이 범위 안에서만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등 공익성을 갖는다고 인정되어 있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 한해 일정한도액 이내에서 손금으로 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비영리법인이 대외 또는 대내 공익법인이나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의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범위내에서 전액손금산입 된다. 위의 법정기부금외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⁵²⁾조에 계기

52)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법인이 1996년12월31일 이전에 공공법인 중 별표 제45호 또는 제101호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수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합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후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②내국인이 다음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문화예술포럼법에 의한 문화예술포럼기부금으로 출손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과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의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영리법인과는 차별을 두고 있다.

나. 출연받은 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및 사용제한

① 법인세 특례 및 사용제한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일반비영리법인」, 「공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공익법인,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한편으로는 비영리법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는 과세의무가 없다. 그 이유로는 공익법인의 사업이 영리법인의 사업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소득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⁵³⁾

그러나 공익법인도 현실적으로 영리법인 동일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동일한 사업에 대한 시장경쟁의 유지를 위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국가에서는 공공성이 높은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율의 차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지정기부금의 손금확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및 감면, 지방세 면제 및 감면 등 많은 조세특례제도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법인세 과세율을 법인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표 IV-4>와 같다.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6.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에 지출하는 기부금

53) 문병엽, 1992, '공익법인의 조세특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18.

<표 IV-4> 법인 유형별 법인세율⁵⁴⁾

법인의 유형	과세대상	법 인 세 율
① 일반영리법인	모든소득	연간소득 1억원이하 : 16% 연간소득 1억원이상 : 28%
② 일반비영리법인 비영리공공법인 학교법인 법인으로보는 단체	수익사업 소득(수입)	연간소득 1억원이하 : 16% 연간소득 1억원이상 : 28%
③ 공공법인	수익사업 소득(수입)	연간소득 1억원이하:16% 연간소득1억원이상:25%
	당기순이익	10%

<표 IV-4>에서 나타나듯이 일반영리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공공법인과 일반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는 공공법인을 제외한 모든법인은 연간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28%이고 1억원이하일 경우 16%이다. 단, 연간소득이 5억원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2%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그러나 공공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은 수익소득에 국한되고 과세율은 연간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1억원이하인 경우 16%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둘째,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례조치로서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세법에서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제1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함께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및 수입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규정 이자 할인액 및 이익⁵⁵⁾

54) 손원익, 199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pp. 28-29

55)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 규정 배당 또는 분배금⁵⁶⁾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⁵⁷⁾

6. 이상 열거한 사업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또한 수익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생긴 부수적 수입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 열거한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의 사업을 포함하지 않는다.

1. 축산업, 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이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3.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3.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56)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3. 2외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 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57)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파세하도록하고 예외적으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제외토록한다. 이때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람료·입장료 등의 부수수익이 있더라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5.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과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 보험사업
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이외에도 위에 열거된 각종 수익사업이나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도 속하지 않는 사업소득⁵⁸⁾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 그리고 비영리공익법인의 공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⁵⁹⁾를 두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공익활동에 직접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전액을, 기타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을 차감한 잔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공익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

58) 송인수,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위', 월간조세9 통권 제4권(1988), 조세통람사, pp. 48-50 .

다음의 각호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 기본통칙사항

- ① 고정자산을 교환, 매각 또는 임의평가함으로써 생긴 차익
- ② 예금, 적금, 회사채,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
(수익사업용 자금에서 발생하여도 과세의무가 없음)
- ③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동 분배금
- ④ 비영리법인이 받은 징발보상금
- ⑤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 ⑥ 회원으로받은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
- ⑦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 ⑧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2) 고정자산·유입취득부동산 매각손익의 수익사업

3) 농업소득에세 생긴 소득

4) 비영리법인의 국가보조금 수입

- 5)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기부금: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동 증여의 가액은 수익사업부분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비영리법인이 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5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전액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까지로 확대하고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다.(법인세법 부칙제6조)

즉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금액은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⁶⁰⁾

셋째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특례 조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⁶¹⁾가 부과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를 제외한 모든 법인(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은 부동산을 대채취득 또는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면제규정이 없으며 특별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한다.⁶²⁾ 그러나 다음 공익법인의 양도소득⁶³⁾에 대해

60) 현행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 ②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 ③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을 설정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으로 보는 것이나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전입된 자산의 사용에 따라 판단한다.
- ④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제 하기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지급준비금의 잔액을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61) 특별부가세란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동기된 임차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이다.

62) 정병수, 1991,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회계와세무7, 대한세무협회 통권제265호, p.36.

63) 양도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동법 동조 동항 제6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양도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서는 특별부과세를 비과세를 하고있다.

- ㄱ)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소유 토지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
- ㄷ)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ㄹ)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② 상속세 특례 및 사용제한

상속세는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상속재산을 과세객체로하여 부과하는 조세⁶⁴⁾이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증여가 설립되는데 이에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결국 출연자에게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게 된다.⁶⁵⁾

(1) 토지·건물

(2)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

- ① 비상장주식: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특례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만을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부가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② 기타자산

- 지배주식:

- ㄱ) 당해법인의 자산 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
- ㄴ)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법인

- 특정시설물이용권주식

-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 64) 상속이라 함은 호주 또는 그 가족이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법률상의 지위를 일신에 전속한 권리 의무를 제외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이다.
- 65) 상속세과세가액의 불산입 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②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③생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가 운영하는 사업
- ④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상속세법상에는 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면제규정만 있고 그 이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공익성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첫째, 출연재산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게 보고토록 하는 보고의무와 둘째, 공익사업에⁶⁶⁾ 사용토록 사용의무를 규정하여 각 공익사업의 종류에 따라 조직이나 운영에 있어 공익성 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먼저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의무는 <표 IV-5>에 제시된 사항을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세추징 및 보고서미제출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는 공익사업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사업년도의 결산보고일에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
- 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에 운영하는 사업
 - ⑥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본다.
 - ⑦공중위생사업
 - ⑧무료이용시설 지원사업
 - ⑨학술·문화사업
 - ⑩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⑪의료보험조합 운영사업
 - ⑫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 ⑬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사업 : 대한민국청소년 및 소년의 전인교육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웅비의 새 역사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본다.
 - ⑭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 ⑮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 법률구조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률구조법인으로써 법률구조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본다.
- 66)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상속세법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 ②당해 공익사업의 운영이 상속세법상의 요건을 계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 ③출연재산 중 주식출연의 경우에는 일정비율 이하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 ④위의 세가지조건에 맞추어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이어야 한다.

<표 IV-5> 법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 출 서 류 명	제 출 기 한	보고서식
· 최초출연에 의해 신규로 공익사업을 개시한때	· 출연재산명세서 · 출연재산 사용 계획서	인가일로부터 90일내	· 별지제 1호서식 · 별지제 2호서식
· 기 개시한 공익사업이 추가출연을 받은 때		출연받은날로 부터 90일내	
· 각 사업연도가 종료 하였을 때	· 출연재산 사용 계획의 진도 및 완료 보고서 · 사업연도 결산서	결산보고일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일)	· 별지제 3호서식
납세관리에 필요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출연재산 사용 명세서 · 이사선임명세서 · 운용소득의 사용 실적 조정명세서 · 정기예금상당액 사용실적 조정 명세서	결산보고일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일)	

둘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사용의무와 공익성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직접 공익목적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출연받은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사용의무와 공익성 유지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ㄱ) 출연재산의 미사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ㄴ) 출연재산운용소득의⁶⁷⁾ 기준미달 사용

67) 출연재산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1조 제항 각호에 계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나 예금, 기타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 및 무수익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처분함으로써 생긴 소득을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운용 소득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고유목적사업에⁶⁸⁾ 사용하지 아니한 때

<산식>

$$\left[\begin{array}{l} \text{당해연도소득금액} - \text{법인세} \\ \quad - \text{소득할 주민세} \\ \quad - \text{방위세} \\ \quad - \text{이월손금} \end{array} \right] \times 30\%$$

ㄷ) 출연재산의 기준미달 사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매년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산식>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x 1년만기 정기에금이자율 x 50%

[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중 출연받는 자산가액 제외]

ㄹ)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불귀속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종료한 때에 잉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ㄴ) 사업목적이 특정인에 대한 혜택 제공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이 사회적지위, 직업, 근무처,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ㄷ) 출연자 등의 사용·수익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때, 다만, 당해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있어서의 사용 또는 수익은 예외로한다.

ㄸ) 공익법인 설립·운영 요건 위반시

공익법인으로 설립·운영 중 이사선임 등의 요건 위배⁶⁹⁾하거나, 내국법인 발행주

68)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원칙상 당해사업연도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에서 당해 운용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금액이지만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할 수도 있다.

69) 공익법인 설립·운영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선임되는 등 공익법인의 설립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사선임요건인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범위는 <별첨 4>와 같다.

식의 5% 이상을 초과 취득할시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기타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 금액의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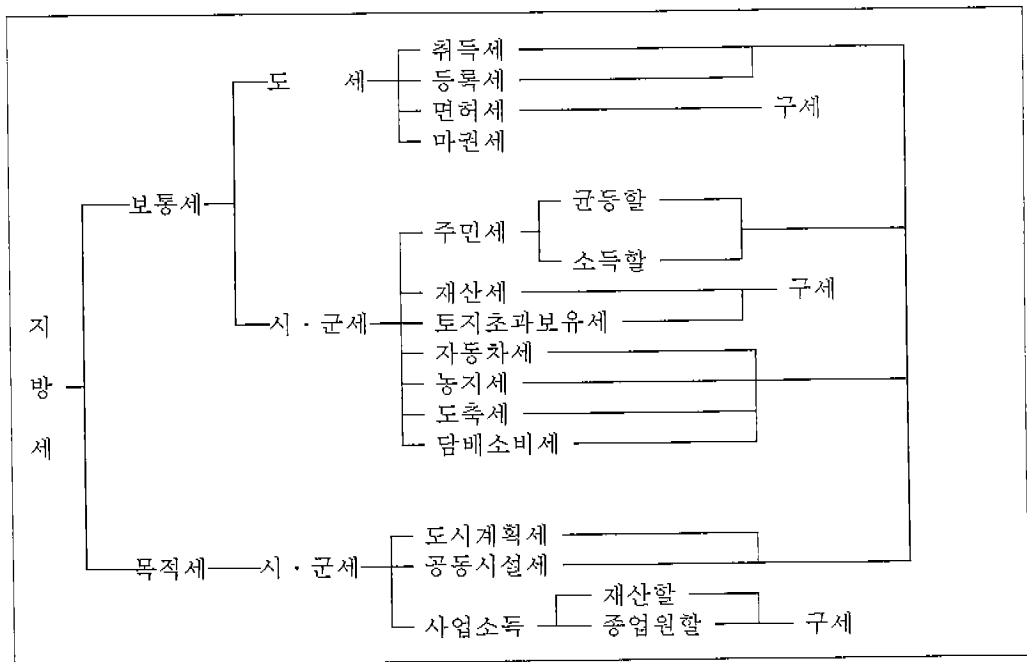
다음의 소득 및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접 2개 사업연도의 3년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 ②항의 출연재산운용소득
- ②항의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 ③항의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금액
- ③항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③ 지방세 특례 및 사용제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달성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의 주민으로부터 혹은 재산이나 수익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인 보상없이 일방적·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지방세를 징수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 IV-6>과 같다.

<표 IV-6> 지방세 체계도



참고: 이창석, '공익법인의 세법상의 위치 -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조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위의 체계도에서 나타난 지방세 조세특례조치는 출연자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법인에 대한 대내 특례조치에 해당한다.

7) 보통세 조세특례

i) 취득세법상의 조세특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소유권 취득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취득가액의 2%가 부과된다. 세법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⁷⁰⁾ 단,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ii) 등록세법상의 조세특례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록세 역시 면제 또는 감면된다. 예를 들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세법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 면제되듯이 등록세 역시 공제된다. 단,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내에서 사찰·사당·불당·성당·교회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록세가 부과된다. 상속이 아니면서 무상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할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1.5%가 등록세로 부과되나,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이 소유권을 등기할 때에는 부동산 가액의 0.8%가 부과된다.

iii) 재산세법상의 조세특례

재산세는 법인이나 공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취득세·등록세의 경우와 같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세법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iv) 농지세법상의 조세특례

농지세는 전, 답, 과수원 등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에게 농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학교·고아원·양로원·수녀원·사찰·교회의 농지로서 학술·시험·실습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경우 농지소득은 농지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70)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개인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물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취득세의 세율은 일반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가액의 1,000분의 20이고, 법인의 비영리용 토지 등은 일반 세율의 100분의 75으로 중과한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농지세를 비과세 받기위해 농지세의 비과세 신청을 농지소재지 관할시장·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v) 토지초과보유세법상의 조세특례

토지초과다보유세는 토지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재산과세의 지방세로서, 매년 과세기준일(5월1일) 현재 개인과 법인 또는 재단의 소유자별 소유토지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일정기준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 시·구·군별로 과세표준과 면적에 의한 안분을 하여 부과하는 세이다.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토지과다보유세를 비과세한다. 또한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도 토지과다보유세를 비과세한다.

vi) 주민세법상의 조세특례

주민세는 인세·소득세·주민의 집합체로서 회비적인 성질이 있는 지방세로서 균등할·소득세할·법인세할·농지세할 주민세가 있다. 주민세법에서는 법인이 경영하는 각급학교와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에 대하여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ㄴ) 목적세 조세특례

i) 도시계획세법상의 조세특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객체로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시, 광역시 또는 시·군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도시계획의 비과세 규정은 재산세의 비과세규정인 지방세법 제184조를 준용토록 한다. 즉, 제사·종교·자선·예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도시계획세가 비과세된다.

ii) 공동시설세법상의 조세특례

공동시설은 서울시·광역시 기타 시·군이 소방시설·오염처리시설·수리시설·기타 공동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공동시설세의 비과세규정은 재산세의 비과세규정인 지방세법 제184조를 준용토록 한다. 즉, 제사·종교·자선·예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에는 공동시설세가 비과세된다.

iii) 사업소세법상의 조세특례

사업소세는 시·구·군이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도권·광역시의 전지역, 기타 시의 전지역, 공장·광산·관광시설 등이 있는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제사·종교·자선·자선·학술·기예·기타 비영리공익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소세는 비과세 된다. 다만 수익사업비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비과세하지 아니한다.

2. 청소년육성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세특례제도 개선방안

가. 법인세법상의 조세특례제도 개선방안

청소년육성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조세특례는 법인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전술하였다. 이러한 조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육성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사업이 주로 연구 및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 수익사업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이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 수익사업에 있어서도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연간소득이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의 16%를 1억원이상은 25%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사업소득 범위에 대해 청소년육성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위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비영리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정부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배당소득을 수입사업 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음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수익사업 및 수입소득이 공익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일내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은 세법의 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개정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범위를 그 실정에 맞게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청소년육성 관련 정부출연기관의 양도차익에 따른 특별부가세 부분에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물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경우도 3년 미만 사용한 부분을 처분함으로써 생긴 양도차익을 수익사업에 포함시켜 모두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학교법인 등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도 공익법인의 공공성을 감안한 조세지원 입장에서 고정자산처분익을 계산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3년미만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에 따른 고정자산처분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초 취득목적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이 확인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과세가 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사회가 다양화되고 지금까지 청소년육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이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일부 공익법인에만 특별부가세 혜택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에따른 부동산투기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방법을 통하여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청소년육성을 활성화 시키는데 보다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셋째, 현재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일괄적으로 기업소득의 7%와 자산(50억원도)의

2%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 기업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가 1981년까지는 세전순이익의 5%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1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전액을 손금산입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미약하다. 국가에서는 기부금이 준조세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한도를 정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으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소득의 탄력성에 따라 소득이 높은 년도와 낮은 년도에 유동적으로 적용가능토록 기부금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경제논리의 입장에서 기부금을 얼마를 제공할 것인가는 기업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이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기업의 종류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기업에게 위임하고 국가는 기업이 충분히 출연할 법·제도적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정기부금의 한도를 10%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나. 소득세법상의 조세특례제도 개선방안

소득세법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조세특례조치는 주로 개인에 대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49조에 개인의 지정기부금 한도를 정하고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가 미국의 경우 사실상 한도가 없으며 일본에서는 소득의 25%를 정하고, 프랑스는 기부금액의 40%를 세액공제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의 개인기부금 세제혜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운영구조가 외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90년 23.8%, 92년 32.4%) 높고, 공익법인에 대한 개인출연이 90년도 이후 기업이나 기타법인의 출연은 감소하는데 반해 개인출연은 점점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공익활동이 전채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장려가 필요하며,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의 선진국 수준으로 기부금의 상한제도를 수정토록해야한다.

다. 상속세법상의 조세특례제도 개선방안

공익법인은 설립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되어 기본재산의 변동 및 수익의 목적사업이외의 사용은 계속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연된 재산을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거나, 일정기간내에 일정액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과세되어야 하나, 일정기간내에 일정액이상 사용을 의무적으로 강제한 것은 계속적·안정적 공익법인의 존속에 무리가 되어 이 조항을 삭제 또는 기간을 연장 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시행령을 출연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인원과 일반관리를 위한 경비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조사결과 출연금 공익법인의 단위사업에 따른 지출비의

평균비율을 보면 사업비 82.5%, 일반관리비 17.5%로 나타남) 출연목적에 직접 사용 비용을 출연금의 80%를 지출토록 하고 20%는 일반관리비로 지출토록 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제안한다. 또한 공익법인은 출연자산을 매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5%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평가액의 5%가 장부가액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부동산인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로 인한 시가 평가와 더불어 오지의 임야 등은 운용소득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저수익성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5%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평가액의 5% 적용을 재산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토록 하여 합리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라. 지방세법상의 조세특례제도 개선방안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주민세, 재산세, 토지초과보유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로서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득세가 있다. 이러한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해석이 고유목적에 위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이나 등록 시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즉, 공익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출연금을 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 목적사업에 대해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정관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공익법인의 기준에 따를 것을 제안한다. 한편, 청소년육성기관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이 주로 청소년문제나 이들에 대한 지도 등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대도시내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5배 중과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도시 토지의 효율적 개발은 추구할 수 있으나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이 청소년이 많은 대도시에서 공익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을 막게 되며, 청소년육성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과 기본재산의 취득 및 허가사항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마.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특례제도 개선방안

기부금은 출연자에게 전액손금으로 인정되는 법정기부금과 소득의 일정금액을 한도로 손금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이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조세법상의 혜택이 차별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의 기준은 당연히 사회적 필요성이 높고 공익성이 강한 공익부분에 대하여 더 큰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법정기부금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에서 특례적용을 받는 법인의

공익성이나 활동내용이 청소년육성사업보다 더 세제상의 유리한 혜택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최초 조세감면특례가 주어진 후 많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당시의 공익적 필요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액손금처리하고 있는 기부금과 일정부분 손금처리하는 기부금과의 세제상의 지원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는 청소년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육성부분에 대한 대한 민간출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에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누락함으로써 청소년육성부분이 타부분에 비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의 중추적인 청소년육성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먼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공법인중 별표 제45호 또는 제101호⁷¹⁾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 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사회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사회증진을 위하여 사회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 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97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6.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

71) <별첨 5> 참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교 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 병원
4.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5.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7.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를 살펴보면 ①항은 자연과학 및 공학계통 연구기관만을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공공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②항과 ③항의 각호에서 지정하고 있는 손금산입특례 대상들은 그 선정기준과 형평성을 살펴볼 때 설득력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현재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과학기술 우선주의로부터 올바른 인간을 육성하는 일을 등한시 하여 우리 국가와 개인이 건전한 문화국가와 민주시민으로 발전하는데 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청소년의 모습은 그 국가의 미래의 모습이며, 역사상 청소년육성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하는 나라가 발전하고 융성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무한 경쟁사회에서 인성교육이 경시된 단편적인 지식전달 위주의 학교교육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학교 밖의 자연과 생활속에서의 청소년육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때이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소년육성에 막대한 국가적·개인적·단체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같이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청소년육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지극히 낮아 청소년육성예산은 불과 교육예산의 1/44 정도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청소년육성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시급히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예를 들면 청소년기본법 조항에서 이미 지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고(제54조) 개발원의 운영지원을 위해 출연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재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제68조)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에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모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①항의 특례 대상에 한국청소년개발원을 추가하거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②항과 ③항의 각호에 한국청소년개발원을 추가 지정하는 개정이 요청된다. 이러한 개정의 중요한 의미는 국가의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청소년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의 중추적 청소년연구·개발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에 대한 출연금 증대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인 청소년육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의 신속한 개정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기부금 손금산

입특례 대상기관으로 지정됨으로서 취약한 기업의 인문사회과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에의 출연 상황에서 산·학·연 차원의 협동체제 구축의 본보기가 훨씬더러 무엇보다
청소년육성을 위한 민간출연의 확대를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V. 결 론

거듭 말하지만 한 국가의 청소년의 모습은 그 국가의 미래의 모습이며, 역사상 청소년육성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하는 나라가 발전하고 융성한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미 앞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과 같이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기능에는 지적능력 계발에 주력하는 “교육”과 감성계발과 도덕적 능력을 개발하는 “육성”이 있으며, 이 두가지 기능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상호 보완되어야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는 교육만능적 사고와 육성경시의 풍조가 만연하여, 청소년의 창조적 사고가 결여되고 이기적인 태도가 심화되는 한편 진취적 기상이 위축되어 총체적인 나약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요즈음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는 국가와 개인들간의 경쟁사회 속에서 단편적인 지식전달을 위주로 하는 학교교육으로는 인성교육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 밖의 청소년육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때이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소년육성에 막대한 국가적·개인적·단체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 현황을 매우 열악하여 우선 법적으로만 살펴 볼 때도 “교육”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강조되고 있고 국가가 정하는 구속적 법령에 의해 국가의 막대한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헌법 제34조에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명시되어 있는 “육성”은 자율성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여 주로 청소년들이 학교 밖의 자연과 생활 속에서 건전한 심신수련활동을 함으로서 청소년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바른 인성을 계발하는 것을 그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청소년 성장에 있어 청소년육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육성에 대한 우리 현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지극히 낮아 불과 국가 교육예산의 1/44 정도에 해당하는 현 실정이고 볼 때 청소년육성재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시급히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중 가장 권할 수 있는 대책은 선진국들의 예를 보아 민간들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출연 확대를 위하여 법령·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러한 개선에는 대체적으로 조세제도의 개선인데, 실제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청소년육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책기관으로서 특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을 조세특례조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사업을 총괄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정부의 부족한 지원만으로는 청소년육성의 많은 과제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의 출연을 통해 국가적 청소년육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인정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을 조세감면규제법의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해당기관으로 지정할 것이 요청된다. 이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정한 교육세 등의 교육재원과는 달리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중추적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

에 대해 자발적인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54조(출연금)의 제②항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또는 연구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 정부가 청소년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법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에 이같은 사항이 누락됨으로써 아직도 한국청소년개발원에 대한 민간출연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재정경제원의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세감면규제법 특례대상 지정 불가의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 다른 인문사회과학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특별히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례조치를 받을 분명한 이유가 없으며 만약, 한국청소년개발원만 특례조치를 받게되면 다른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어 다른기관으로부터 항의 사항이 될 것이며 둘째, 한국청소년개발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4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개인 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각호 제24호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서 이미 공익성 기부금 수혜 대상에 들어가 있음을 주장하고 셋째,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위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간출연법인이 자기자본(50억원이 한도)의 2/100와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7/100을 합한 액수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는 법조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 개인은 소득세법 제49조) 때문에 이에 저촉받지 않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①항이 지정하는 기부금이 전액 손금산입될 수 있는 특례대상에 포함 되거나 ②항 각호에 추가 지정될 것을 요구하나 실제로 민간출연법인이 자기자본의 2/100(50억원이 한도)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7/100을 합한 액수를 초과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도 충분히 민간출연 기부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경제원의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세감면규제법 특례대상 지정 불가에 대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의견을 보면 첫째,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례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조세법상의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만을 가지지 않고 무엇보다 국가의 경영과 정책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중요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대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올바른 가치관단의 선택·결정임을 국민에게 알리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다른 인문사회과학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에 얽매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청소년육성에의 민간출연의 길을 제한하고 특례화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가치가 동일하다는 잘못된 가치관의 표명일 뿐만 아니라 가치에 따른 국가정책 결정의 우선순위와 가치의 중요성에 따른 법의 우선순위 결정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둘째, 선진국의 민간출연의 형태를 보면 우리와 같이 과학·기술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출연되지 않고 청소년분야에도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기부를 아끼지 않고 있고 정부도 그러한 경우 많은 조세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소년개발원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혜택을 받게되는 사실은 우리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로 장래 예측되는 기업과 개인들의 민간출연 기회를 열어줌으로서 부의 사회적 환원과 나눔의 큰 뜻과 함께 정부의 청소년육성 예산 부담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세제, 재정경제원은 기업의 기부 현실태를 조사해보아도 소득금액의 7/100과 자기자산의 2/100(50억 한도)를 넘어서 기부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대상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한 개인이 전재산을 대학이나 기타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현상태에서는 청소년육성을 위해 어느 한 개인이 한국청소년개발원에 기부하고자 하여도 전액 손금 처리가 되지 않고 증여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네째, 기업이 조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부내역을 공개하려 하지 않고 국세청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정확한 조사가 어렵지만 실제로 중소기업 중에는 기부금이 소득금액의 7/100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기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어느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기부금을 매년 지원 약속한 경우에 갑자기 어느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낮아질 때는 기부금이 소득금액의 7/100을 넘게되어 기부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재정경제원의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세감면규제법 특례대상 지정 불가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는 설명이고 다섯째, 이미 조세감면규제의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들의 민간출연 지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 무조건적인 기부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산학협동 차원의 단기 또는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지원 규모는 기부금이 전액 손금처리 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청소년육성사업에서도 예를들면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청소년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민간출연은 상당한 규모이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같이 기업과 공동으로 공익성 청소년육성사업을 전개하고자 민간출연을 유도하기 위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조세감면규제 특례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지도자층의 가치판단에 의한 선택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경영과 정책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중요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대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육성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에게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공익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정적 부담도 줄이는 한편, 특히 민간기업들의 이윤을 사회의 공익활동에 환원하는 선진 기업문화를 만들어 이러한 문화적 향수를 우리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입어서 건전한 청소년문화에서 건전한 사회전반의 문화가 조성되는 지혜와 의지가 있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용일, 조홍식, 김연옥 공저(1995), *사회사업실천론*, 서울:나남출판
- 김정환(1988), '공익사업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월간조세 9월호
- 문병엽(1992), '공익법인의 조세특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화체육부(1993.9),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 문화체육부(1995.4), *청소년기본법령집*
- 문화체육부(1996), *청소년백서*
- 박상용(1995), '기업재단의 세제와 법규의 변천', 동서문제연구원 동아시아연구 논총 제4집, '한국공익재단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서울: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박충환(1990), *비영리기관의 회계*, 서울:법문사
- 손원익(199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손원익 외(1996), '기업의 문화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중간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 송인수(1988),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범위', 월간조세9 통권 제4권, 조세통람사이창석, '공익법인의 세법상의 위치 -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조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산동회계법인(1996), *상속·증여세 해설과 실무*, 서울:산동회계법인
- 삼성사회공헌팀(1995), *사랑의 및 나눔의 별 - 삼성사회공헌활동*
- 신유근(1992), *기업과 사회*, 서울:경문사
- 전국경제인연합회(1995),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 - 한국기업재단총람*
- 정구현·이혜경 공편(1995), *한국공익재단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서울: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정기성(1991), '우리나라 민간공익활동의 역사적 고찰', 강릉대학교부설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집
- 정병수(1991),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회계와세무7, 대한세무협회 통권제265호
- 조달영(1996), *법인세법정해*, 서울:조세통람사
- 최일섭(1994), *지역사회복지론*,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 한국청소년개발원(1996), '21세기 청소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1급청소년 지도사과정연수교재
- 황창순(1992), '청소년 수련사업에 재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연구원
- 孝橋正一/중앙사회복지연구원 譯(1991), *사회사업의 기본문제*, 서울:이론과실천
- Graham Room저/인경석 역(1985), *복지사회학*, 서울:한국복지사회연구소
- Offe. C(1974), 'Structural Problems of the Capitalist State' in K.Beyme(ed.)

German Political Studies Vol.1

Parkin. F(1971), Class Inequality and Citizenship London Macmillian

Gough. I(1975), 'State Expenditure in Advanced Capitalism' New Left
Review No.92

< 부 록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4조(수익사업) ①청소년단체는정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련활동과 관련한 수련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민간인의 참여조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금융·세제 기타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출연금) ①정부는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또는 연구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조세감면등) ①정부는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개발원, 상담원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인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지원,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 개발원 및 상담원의 운영지원,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수련활동 관련기관이 수입하는 수련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 기자재 기타 필요한 용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토지 및 시설장비 등의 임대 2. 청소년관련정보 및 각종 간행물 출판·판매 3. 수련활동장비·기자재 및 기타 수련활동관련물품의 제작·판매 4. 기타 인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익금은목적사업수행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청소년단체의 일반회계와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제58조(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제59조(잉여금의 처리) 제6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61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별첨 1>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자선, 종교 등 공익성 비영리 공익법인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공공법인으로서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폐공사
5.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
6.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 주택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10.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1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
12.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
13.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과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15.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감독원
16.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17.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
18.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19.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
20.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공사
2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23.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2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5.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2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2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2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29.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료보험관리공단
30.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3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3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중앙회
34.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3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3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사업조합·연합회와 중앙회
37.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38. 입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중앙회
39.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40. 농업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배량조합 및 동 연합회
4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동 연합회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동 연합회
42.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43.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관리기금
4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신용보증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46.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
47.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수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
48.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49.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대한위원회
50.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51.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급협회
5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更生보호공단
53. 문화예술진흥원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54.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5.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
56. 서울대학교병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57.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
58.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
59.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감독원
60.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61. 한국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개발원
62.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63.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5.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66.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67.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국토개발연구원
68.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69.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70.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스카우트주관단체
71.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연맹
72.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산하조직
73.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연합회
7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75. 지방공기업법 및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도의료원
76. 지적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 지적공사
77. 어선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어선협회
78.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
79. 해운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기술원
80.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81.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대한소방검정공사
82.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83.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담배인삼공사
84.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85.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86.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87.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
88.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89.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90. 환경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9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9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93.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4.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
95.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
96.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97.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8.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99.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100.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50조 또는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 공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101.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102.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통신개발연구원법
103.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산원과 한국정보문화 센터
104.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
105.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10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07. 한국법제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법제연구원
108. 한국행정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행정연구원
1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0.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111. 잠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잠업조합
11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장애인복지체육회
113.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14. 전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115.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
116.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117. 한국조세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세연구원
118.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1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120.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교병원
121.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122. 영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공사
123. 민족통일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족통일연구원
12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12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126.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127.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
128. 소거
129.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0.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석탄공사
131.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13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133.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식품위생연구원
13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97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135.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
136.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137.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

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138.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3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
14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광
주비 엔날레
14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
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42.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별첨 2>

소득세법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
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
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3.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직업훈
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지출하는기부금이나 장학금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6.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
는 기부금과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하 건물
(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직할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
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와 대학체육회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
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
하는 기부금
8.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
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유공회비
11.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스카우트주관단체에 지출하
는 기부금
1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

15. 제7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비 및 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협회에 납부하는 회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와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위의 제16호에서의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를 말한다.

제17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영 제42조 제1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삭제
2.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사단법인 한국4-에이취 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사단법인 제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또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8.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조직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어린이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更生보호공단에更生보호사업을 위한 사업비·시설비·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사단법인 1천만 이상가족재회추진위원회 및 사단법인 민족통일촉진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삭제
1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8.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나병퇴치를 위한 의료사업 및 연구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되는 기부금

20.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1.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2.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4.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5.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6.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7.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연구비·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8.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에 지출하는 기부금
29.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조직에 사업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0.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1. 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학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사량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및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3.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보전협회,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사업지로 지출하는 기부금 상속세법상의 공익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2)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更生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 (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6)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계기 하는 사업
 -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9)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10)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1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사업

- (12) 공무원 및 사립학교지원의료보험법에 의한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 (13)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사업
- (1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 (15)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률 구조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16) 상기 1내지 15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

<별첨 3>

상속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2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으로는 다음의 사업이 해당된다.

-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 직업훈련사업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연수사업 및 중소기업 상설 전시사업
- 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 4.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운영하는 사업
- 5.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가 재일한국인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 6.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설립된 스카우트 주관단체가 스카우트 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 7.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
-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 9.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가 민주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 10.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헌정회가 민주헌정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재의료관리원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별첨 4>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선임되는 등 공익법인의 설립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사선임요건인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계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계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 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6. 삭제
7. 제1호 및 제2호에 계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 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의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 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③ 제2항 제7호의 2에서 ‘적정임대료’라 함은 제공한 사택의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그 사택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 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별첨 5>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①항이 지정하는 특혜대상

가. 별표 제45호(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과학기술원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 한국기계연구원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 한국원자력연구소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8. 한국자원연구소
9. 한국해양연구소
10. 한국전기연구소
11. 한국화학연구소
12. 한국과학재단
13.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4. 한국인삼연초연구소
15. 광주과학기술원

나. 별표 제 101호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청소년개발원에 대한 민간출연금의 조세감면 관련 법규

구 분	법 조항	시 행 령	시행규칙
청소년 기본법	· 제54조(출연금)제2항 · 제68조(조세감면 등) 1항, 2항		
법 인 세 법	· 제1조(납세의무) 1항 3호, 6호 · 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1항 1호, 2항 · 제8조(과세표준) 1항 ·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1항 1호, 3호, 4호 ·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 산입)	·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1항 2호, 2항 · 제16조(법령등에의한 준비 금의 손금범위) 8항 3호 ·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 손금산입) ·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4호, 15호 · 제42조의2(비영리공익법인 의 범위)	· 제15조의4(지정 기부금의 계산 기준) · 제17조(공익성 기부금의 범 위) 24호
소 득 세 법	· 제47조(기부금 필요경비 계산) · 제49조(기부금의 필요경 비불산입) 1항 1호 2호 · 제66조의3(기부금의 특별 공제)	· 79조(기부금의 범위) · 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4호, 16호 · 제120조의3(기부금특별 공제)	· 제48조(수익 기부자산의 필요경비 계 산) · 제44조(공익성 기부금의 범 위) 22호
조 세 감 면 규제법	· 제59조(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1항, 2항 · 제60조(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특례) 1항 · 제61조(기부금의 손금불 산입 특례) 1항	· 제58조(공공법인의 범위) 1항 · 제5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 손금산입)	
상속세법	· 제8조의2(상속과세액 불산입)	· 제3조의2(공익사업)	

한국청소년개발원에 대한 민간출연금의 조세감면 관련법규 설명자료

법 인 세 법	법 인 세 법 시 행 령	법 인 세 법 시 행 규 칙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규정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 6.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 ②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 범위) ⑧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내에서 3.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 되었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령'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	제15조의4(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 단서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 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이월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24.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 인 세 법	법 인 세 법 시 행 령	법 인 세 법 시 행 규 칙
제8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의2(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그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합산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법인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지출한 출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의 종료만기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그후의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이하 이항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제40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제41조(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① 법인이 법제18조및법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글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제18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대	

법 인 세 법	법 인 세 법 시 행 령	법 인 세 법 시 행 규 칙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하고 이호에서는 50억 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하여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가지금금 등으로 이연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때까지 소득금액합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1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① 법제18조제3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에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단체·장학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15. 제1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 제42조의2(비영리공익법인의 절차) 법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기술단체와 대한체육회(특별시·직할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조 세 감 면 규 제 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비 고
제59조(공공법인에 대한 법인 과세 특례) ① 공공법인(별표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 및 동법제22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과세표준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공공법인에 대한 소득합산의 특례) ① 공공법인에 대하여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지출자에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외의 법인과 별표중 제32호 내지 제42호, 제93호 및 제111호의 법인(제40호의 법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제외한다)은 법인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법인이 1996년12월31일 이전에 공공법인중 별표 제45호 또는 제101호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수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합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후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인이 다음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제58(공공법인의 범위등)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중 제7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산하조직 '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달성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중 다음의 조직을 말한다. 제59조(고유목적사업기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② 법제6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별표중 제32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조 세 감 면 규 제 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비 고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납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6.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비 고
제1조(목적)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지출하는 연구기관의 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의하여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과학기술원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 한국기계연구원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 한국원자력연구소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8. 한국자원연구소 9. 한국해양연구소 10. 한국전기연구소 11. 한국화학연구소 12. 한국과학재단 13.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4. 한국인삼연초연구소 15. 광주과학기술원	

소 득 세 법	소 득 세 법 시 행 령	소 득 세 법 시 행 규 칙
제47조(기부금의 필요경비합산) 다음 각호의 기부금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의 합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당해 기부금과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49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이외의 기부금은 제4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합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말일현재의 산출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하는 금액 제66조(기부금특별공제)3① 거주자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로서 당해 사업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합산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③ 법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제44조(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영 제80조 제1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2.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48조(사유수익기부자산의 필요경비계산) 영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당해 기부자산이 법제47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금액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당해 기부자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또는 계산으로 보는 경우를 공제한다)을 이연자산으로 하여 그 내용 년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 다만, 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 나. 가. 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부자산가액을 전액필요경비로 계상하기 전에 당해 자산이 멸실되거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어

소 득 세 법	소 득 세 법 시 행 령	비 고
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의 합계소득금액(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제2조의 기부금은 당해 연도종합소득금액에 100분의 5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47조에 계기한 기부금 2. 제49조의 지정기부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지정기부금'라 한다 ③ 기부금특별공제액이 제1항의 공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은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16. 제1호 내지 제15호와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제120조의3(기부금특별공제) ① 법 제66조의 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부금납입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근로소득자가 종사하는 직장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여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갑종에 속하는 노동소득이 있는 자 또는 을종에 속하는 노동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기부금납입 영수증 1통을 당해 연도 1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자와 을종에 속하는 노동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에 기부금 납입 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 2. 당해 기부자자산이 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부자자산의 가액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 중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비고
제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 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	제3조의2(공익사업) ②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계기하는 사업 ③ 법 제8조의 제1항제1에서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⑥ 법 제8조의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이하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2.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 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사업의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출연하는 것 ⑦ 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비고
외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운용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및 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제1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매각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제외한다. 6. 그 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지위 직업 근무처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서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과 당해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⑨ 세무서장은 공익사업이 법 제8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 2. 제7항 제2호 또는 제17항 제1호에 규정한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하여 산출한 재산가액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 3. 제7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재산가액 4. 제7항 제6호에 또는 법 제8조의2 제5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출연재산이나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5. 제7항 제7호 또는 법 제8조의2 5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출연재산이나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이익에 상응하는 가액 6. 제6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지 아니하거나 제7항 제8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 7. 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	

